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112-1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2017. 5.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2017. 5.



## 머 리 말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원천징수의무자와 실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회사의 원천세 신고·납부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명세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관련 규정과 이행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불일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원천징수 실무자의 신고서 작성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신고납부 불일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자 회사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사례, 자주묻는 질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책자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 법령정보시스템(taxi.hometax.go.kr)에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니 원천징수의무자는 물론 국세공무원도 자유롭게 내려받아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대원



**제 1 장    원천징수 개요**

- 1. 원천징수제도의 특징 ..... 2
- 2. 원천징수 대상 주요 소득 ..... 2
- 3.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4
- 4. 원천징수세율 ..... 6
- 5. 원천징수시기 ..... 8
- 6. 원천징수 제외 대상 ..... 10
- 7.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 ..... 11
- 8.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대상 소득 ..... 11
- 9.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납세지 ..... 12
- 10. 원천징수 납부절차 ..... 13
- 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 14
- 12. 가산세 ..... 16
- 13. 소득별 원천징수 ..... 18
  - 1) 근로소득 원천징수 ..... 18
  - 2)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20
  - 3) 퇴직소득 원천징수 ..... 21
  - 4) 사업소득 원천징수 ..... 37
  - 5) 기타소득 원천징수 ..... 39
  - 6)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40
  - 7) 이자소득 원천징수 ..... 44
  - 8) 연금소득 원천징수 ..... 45
- 14. 2017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 50

**제 2 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례**

- 1. 작성기준 ..... 69
- 2. 기본사항 ..... 74
- 3.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 75
- 4. 환급세액 조정 ..... 76
- 5. 소득구분 코드별 작성방법 ..... 76



# 목차

6.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란 .....	77
7.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77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 .....	78
9. 납부서 작성방법 .....	79
10.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83
11. 소득처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87
12. 사례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88
13. 국가기관의 원천징수 관련 유의사항 .....	102
14. 주요 지급명세서 작성사례 .....	112
15. 원천세 신고·납부 Q&A .....	117

## 제 3 장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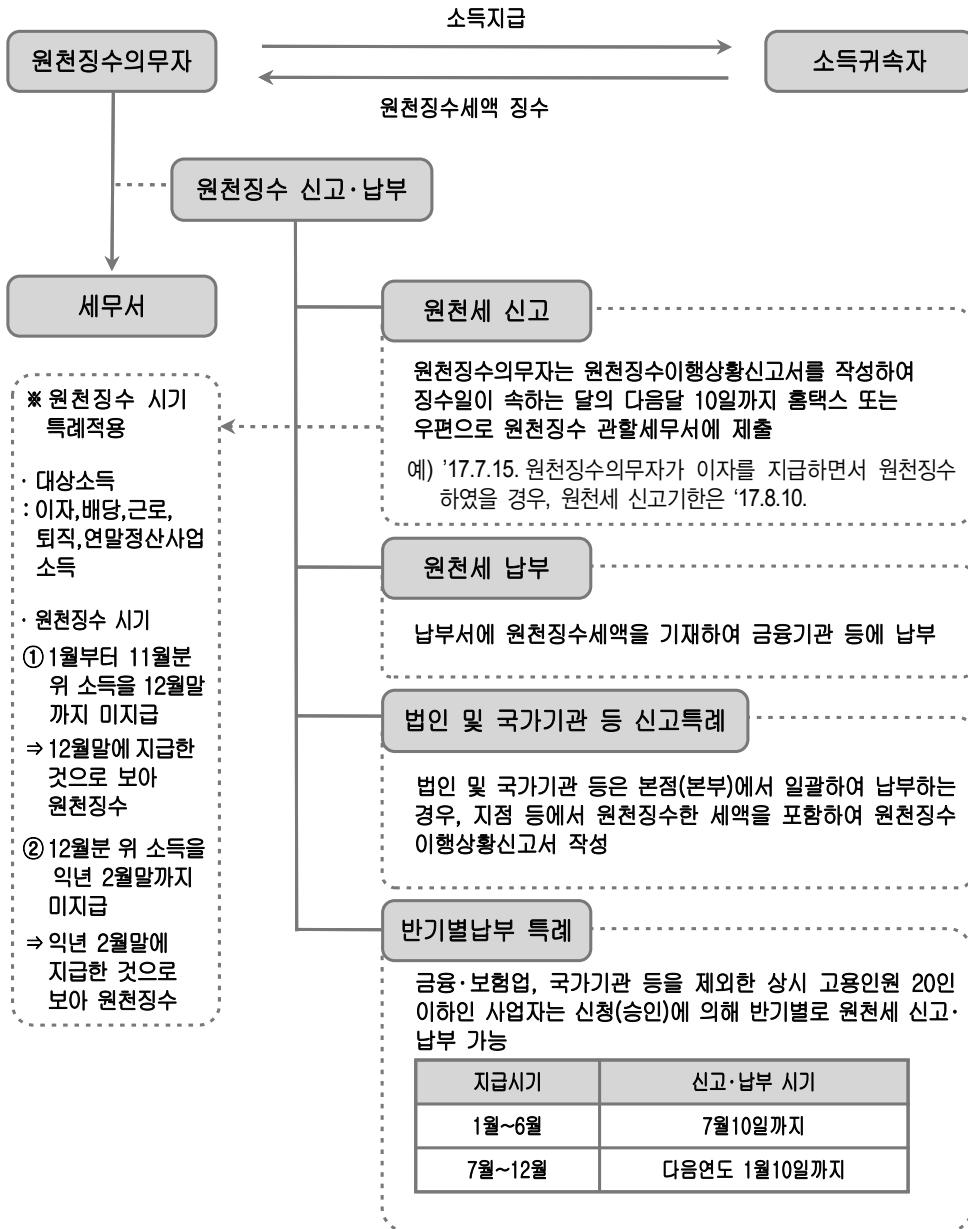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 홈택스 세금신고 및 신고분납부 .....	130
2. 원천세 홈택스 신고 이용안내 .....	131
3. 원천세 전자신고·납부 Q&A .....	147

## 제 4 장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1. 비거주자 판정 .....	150
2. 과세대상소득 .....	153
3. 원천징수의무자 .....	157
4.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	159
5. 원천징수 시기 .....	160
6. 과세표준 계산 .....	160
7. 원천징수 세율 .....	162
8.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165
9.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167
10. 비과세·면제신청 .....	167
11. 지급명세서 제출 .....	169
12. 조세조약 제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	171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방법





# 제 1 장

## 원천징수 개요

### 1. 원천징수제도의 특징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등 소득자는 번거로운 세금 신고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지출증빙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비사업자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 2. 원천징수 대상 주요 소득

구 분	대표적인 소득	신고·납부의무
(일 반)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이사주조합인출금,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하고 은행 등에 납부</li> <li>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하고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li> </ul>
일 용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li> <li>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li> <li>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월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li> </ul>

구 분	대표적인 소득	신고·납부의무
퇴직소득	퇴직금, 퇴직위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li> <li>•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소득자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 제출</li> </ul>
기타소득	상금, 당첨금, 원고료, 인세, 강연료, 알선 수수료, 사례금, 위약금과 배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li> <li>•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자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li> </ul>
사업소득	외부강사의 강사로 등 직업적 인적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li> <li>•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소득자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 제출</li> </ul>
연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li> <li>• 사적연금(연금계좌로부터 연금수령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받는 분부터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li> </ul> </li> <li>•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정된 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li> </ul> </li> <li>•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li> </ul>
이자·배당소득	은행예금이자, 배당금, 비영업대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li> <li>•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li> </ul>

※ 지급명세서 작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별지서식(제23호, 제24호)에 따라 소득자별로 작성  
 ※ 2014년 이후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시 세액공제 폐지

### 3.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가. 원천징수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소득세법)	법인세 납세지(법인세법)
① 거주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②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③ 법인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li> <li>다만,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li> <li>·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li> <li>· 외국법인 :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li> <li>- ㉠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동일</li> </ul>
	본점일괄 납부신청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li> <li>-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li> </ul>	

## 나. 본점 일괄납부

### ① 개념

-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② 본점일괄납부 신청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지점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 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법칙 §2의2)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 신청할 수 있음
- 신고 및 납부방법  
본점일괄납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본점 등에서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고 납부
-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단,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 불가)

### ③ 사업자단위과세제도(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 사업자단위로 등록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의 본점 등에서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4. 원천징수세율

### ○ 거주자 및 내국법인(소득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 율	비 고	
거 주 자	이자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10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10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1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소득	90/100	특정채권의 경우 20/100 (*01.1.1이후 15/100)
		그밖의 이자소득	14/100	
	배당	고배당기업의 금전 배분 배당소득	9/100	종합과세 시 5% 세액공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100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1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90/100	
		그밖의 배당소득	14/100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100	봉사료 5%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100		
연금	국민연금·지역연금	기본세율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퇴직연금·사적연금	3%~5%	연령·유형별 차등 - 퇴직소득과세이연분 : 3% - 종신행 연금 : 4%	
기타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20/100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 일반적인 경우 : 15% · 부득이한 사유 : 12%	
	복권당첨금 중 3억원 초과분	30/100	3억원이하 20%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법 인	이자	비영업대금 이익	25/100	
		그 외	14/100	
	배당	투자신탁의 이익	14/100	

※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신고 대상이 아님(단, 연간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은 합산신고 선택 가능)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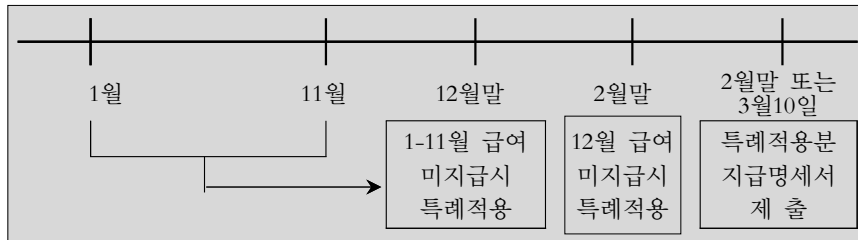
구 분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19조)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3조)
이 자 소 득	20(채권이자: 14)	20(채권이자: 14)
배 당 소 득	20	20
부 동 산 소 득	-	-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2
사 업 소 득	2	2
사 용 료 소 득	20	20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기 타 소 득	20	20
근 로 소 득	거주자와 동일	-
연 금 소 득		
인 적 용 역 소 득	20	20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5.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



구 분	원 천 징 수 시 기 특 례 적 용
근로소득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이자·배당 소득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사업소득	-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퇴직소득	-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실무 상 원천징수시기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소득별 수입시기(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구 분	수 입 시 기
이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유형별포괄주의)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li> <li>○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li> <li>○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li> </ul>
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지급을 받은 날</li> <li>○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li> <li>○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li> <li>○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것: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li> </ul>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봄</li> </ul>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li> <li>○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li> <li>○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li> <li>○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li> <li>○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해당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된 날</li> </ul>
연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li> <li>○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 연금수령한 날</li> </ul>
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중전 일시재산소득):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li> <li>○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li> </ul>
퇴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퇴직한 날</li> <li>○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li> </ul>



## 6. 원천징수 제외 대상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 \*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은 제외)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 원천징수 배제(소법 §155)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 원천징수시기 전에 수입시기가 도래하여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한 경우(소법 §85③)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금액이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 \* 원천징수시기가 수입시기보다 빠른 일반적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

질 문	답 변
•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여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추가 납부할 필요 없음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여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 7.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

소득자		원천징수대상소득	납부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인적용역 소득, 퇴직소득, 토지·건물 양도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 양도소득)	

※ 납부세목코드는 p81 참조

※ 신고서와 납부서의 세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불필요한 해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8.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대상 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구분	대상소득
이자·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근로소득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구 조감법 §92의4)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2016년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액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 × 20%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 × 10%

○ 신고·납부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세목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
- (납부서)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 9.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납세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 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여 납부

소 득 자	국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비 고
개 인	○	○	
내국법인	○	○	법인세 자진 신고시 지방소득세 납부
외국법인	○	○	

- 지방소득세(원천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전자신고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신고·납부.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c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

○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지방소득세 납세지

구 분	납 세 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근무지(본점 또는 지점)를 관할하는 시·군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 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하는 지점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 10. 원천징수 납부절차

### ①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당해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 상대자의 납세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② 납부 및 자료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하고(소령 §185①),

-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함(소령 §185②).

### ③ 반기별 납부제도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는 원천징수의무자[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소법 §128②).

다만, 다음의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함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 제156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납 승인신청요건 및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요건	종업원 수	직전과제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20인 이하
	제외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신청기간		6월 1일~6월 30일, 12월 1일~12월 31일
신청 방법	전자신청	홈택스에 의한 승인 신청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원천세 신고·납부 구분

구 분	내 용	
매 월 납 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급여 등 매월 지급이 있는 경우 매월 신고·납부	
반기별 납 부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신고·납부	
	지 급 시 기	신고 납부시기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2017년 7월 10일까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2018년 1월 10일까지
※ 신고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 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① 원천징수신고·납부

매월 정기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신고서 상 납부세액과 금융기관에 납부한 세금이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급여일에 원천징수한 세금만 은행에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지 않음)	세무서에서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알 수 없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추가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하도록 요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무납부한 세금 고지서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 발생시 환급받을 수 없으며,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 발생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

매월(반기별) 회사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월별(반기별) 인원·총 지급액의 연간 합계액을 다음해 초 제출된 지급명세서 상 인원·지급총액과 비교하고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소명요구, 수정신고 안내 될 수 있음

소득종류	I. 이행상황신고서 계*		II. 지급명세서 제출내용**		III. 차이내용***	
	① 인원	② 금액	③ 인원(건수)	④ 금액	⑤ 인원 (①-③)	⑥ 금액 (②-④)
근로소득 [A02(중도)+A04(연말)]	10	255,000,000	9	250,000,000	1	5,000,000
사업소득(A25)						
사업연말(A26)						
기타소득(A40)	10	15,000,000	11	16,500,000	-1	-1,500,000
금융소득 (이자, 배당, 법인원천)						

\* 원천세이행상황신고신고서 상의 인원 및 총지급액을 단순 누계

\*\* 지급명세서 제출내용 : 2월28일(3.10)까지 접수한 지급명세서의 건수, 금액

\*\*\* 차이내용 : "+"인 경우 지급명세서 과소(미제출), "-"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소(미제출)임

③ 불일치 발생 사유별 해결방안

불일치 발생사유	해 결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회사(퇴직금 승계 관계회사 포함) 내에서 전출·입</li> <li>• 회사의 합병 및 분할</li> <li>• 본점 일괄납부로 변경</li> <li>• 개인기업의 법인전환</li> <li>• 개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li> </ul>	소멸된 회사분의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의 사업자번호로 지급명세서에 기재하기 때문 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멸된 회사분의 근로소득 및 사업자번호를 ‘전 근무지’란에 구분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과소제출</li> </ul>	원천세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명세서 미제출·과소제출</li> </ul>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li> </ul>	지급명세서 면제대상 소득을 미리 파악하여 추후 불일치 사유 해명 요구에 대비

④ 가산세 부과대상

- 제출기한이 지나서 추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제출하여 불부합이 발생한 경우 무납부·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에 따라 과소납부한 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또는 소득세법 제85조)

## 12. 가산세

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text{미납세액} \times 3\% + (\text{과소} \cdot \text{무납부세액} \times 3/10,000 \times \text{경과일수}) \leq 10\%$$

- 납부기한(익월 10일) 다음날 납부시 3.03%, 234일 경과 시 10%의 가산세 부담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공적연금법에 따라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 등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②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18.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지급금액의 100분의 0.5를 적용

\*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같음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자는 5천만원) 단,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개인 및 법인사업자 동일)

구 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3월내)
근로·퇴직·사업	1월 ~ 12월	다음연도 3.10	다음연도 6.10
일용근로소득	1월 ~ 3월	4월말	7월말
	4월 ~ 6월	7월말	10월말
	7월 ~ 9월	10월말	다음연도 1월말
	10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그 밖의 소득	1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13. 소득별 원천징수

### 1) 근로소득 원천징수

#### ① 원천징수

- ㉠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 반기별납부자의 경우도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시 6개월분 납부
- ㉢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가족 수 별로 정한 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내려받기 및 조회

#### ③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회시 필요한 정보
  - ㉠ 월급여액 : 비과세소득과 학자금 지원액 제외
  - ㉡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수 산출

\*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④ 간이세액표 원천징수비율 선택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 가능

\* 2015.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하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 제출(80%, 120%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 원천징수방식 선택시 동일 과세기간 중에는 계속 적용

**사 례**

월 급여가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금액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으로 이중 20세 이하 자녀는 2명임 ⇨ ‘6명’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2,500	2,510	41,63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2,510	2,520	42,490	28,940	16,740	13,360	9,990	6,610

※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 = 6명

원천징수세액은 7,040(소득세 6,400, 지방소득세 640)\*원

\* 간이세액 80% 선택시 소득세 5,120원(지방소득세 510원), 120% 선택시 7,680원(지방소득세 760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해당 원천징수세액 이상으로 원천징수·납부해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법인46013-4374, 1995.11.28)
-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와 19% 단일세율\* 중 선택 가능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포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에 제출

④ 신고 납부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금은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⑤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퇴직소득의 경우도 동일)
- ㉡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급여액을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퇴직소득의 경우도 동일)

- ㉔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단, 11.1.~12.31.까지 결정된 경우는 다음연도 2월 말일)
  - ㉕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 ⑥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3회 분납)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여 납부 가능

## 2)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①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시행령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노무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므로 3월(1년) 이상 계속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계속 고용으로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 근무 후에 퇴직한 경우 일반근로자로 분류하여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일용근로 여부를 판단시 3월 이상 근무라 함은 매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 단위로 계속 근로 제공시의 근로 월수로 판단함

②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일당 15만원 5일 근무시)

계 산 구 조	사 례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15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100,000원
= (일용)근로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 : 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일 총급여액이 **13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 판단 (원천세과-216, 2011.04.08)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종결(연말정산대상 소득 아님)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인별 연간 일용근로 소득금액에 따라 다음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참조]

3) 퇴직소득 원천징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예외적인 사유외에는 '12.7.26.부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소득세법 제22조 및 제146조 개정에 따라 2013년과 2016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음

○ 「근로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변경내역('12.7.26.)

구 분	종 전 ('12.7.25.이전)	현 행 ('12.7.26.이후)
중간정산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가능(근퇴령 제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금 지급 방법	○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	○ 가입자가 55세 이후 등의 일정 사유 이외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로 이체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금 지급액	○ 퇴직자의 퇴직금에서 회사가 퇴직연금에 적립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지급	○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자 급여 전액 지급(단, 사업의 도산 등 경우 예외)

○ 2013년 이후 퇴직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종 전	개 정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	○ 퇴직소득 범위 - 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 * 퇴직공로금·위로금: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	○ 퇴직소득 범위 -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
퇴직소득 산출세액 연분연승 방법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①(연분) 과세표준 ÷ 근속연수 ② ① × 기본세율(6~38%) ③(연승) ②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①(연분) 과세표준×5 ÷ 근속연수 ② ① × 기본세율(6~38%) ③(연승) (②÷5) × 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이연	○ 퇴직금 과세이연계좌 이체시 과세이연 - 이체된 퇴직소득은 이연계좌 인출시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소득의 이연) ○ 과세이연 적용요건(①+②) ① 퇴직금의 80% 이상을 이체 ② 퇴직한 날부터 60일내 이체	○ 과세이연 방식 변경 -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세액을 과세이연 (소득의 이연 → 세액의 이연) ○ 과세이연 적용요건(① 또는 ②) ①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80% 이체요건 폐지) ②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내 연금계좌에 입금

○ 2016년 이후 퇴직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 주요 개정사항



\* 퇴직소득 산출세액 적용비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 규정 방식	80%	60%	40%	20%
개정 규정 방식	20%	40%	60%	80%

①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세 신고서 기재란
퇴직금(회사)	사용자(회사)	퇴직소득 ‘그 외’(A22)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용자(회사) ○ DB 연금사업자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귀속은 회사 이므로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임	퇴직소득 ‘그 외’(A22)란
확정급여형(DC) 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 ○ DC형은 근로자 개인별로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퇴직 시에 원금과 운용수익을 수령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자임(회사는 퇴직연금 불입 시 퇴직급여로 손금처리) ○ 회사와 DC 연금사업자가 동시에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퇴직금 정산	퇴직소득 ‘연금계좌’(A21)란

②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 경우 ㉡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신청할 수 있음

-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수입시기(귀속시기) 사례

- 1) 퇴직일이 2016.12.31.이고, 퇴직소득 지급일이 2017.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퇴직일이므로 2016년임(2016년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 2) 중간정산 시점이 2016.12.31.이고,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이 2017.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또는 지급할)시기를 퇴직일이므로 2017년임(2017년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③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종전규정과 개정규정 퇴직소득 세액계산 구조 비교>

종전 규정	개정 규정																																																					
<p>○ 퇴직급여액</p> <p>○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p> <p>○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40%) - 근속연수공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근속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년 이하</td> <td>근속연수×30만원</td> </tr> <tr> <td>10년 이하</td> <td>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td> </tr> <tr> <td>20년 이하</td> <td>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td> </tr> <tr> <td>20년 초과</td> <td>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td> </tr> </tbody> </table> <p>○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p> <p>○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㉗ + ㉘) *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안분</p> <p>㉗ 2012년 이전분 = (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p> <p>㉘ 2013년 이후분 = (과세표준÷근속연수)×5×세율÷5 ×근속연수</p> <p style="text-align: center;">&lt;기본세율&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과세표준</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세율</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누진공제</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d>-</td> </tr> <tr> <td>4,600만원 이하</td> <td>15%</td> <td>1,080,000원</td> </tr> <tr> <td>8,800만원 이하</td> <td>24%</td> <td>5,220,000원</td> </tr> <tr> <td>15,000만원 이하</td> <td>35%</td> <td>14,900,000원</td> </tr> <tr> <td>5억원 이하</td> <td>38%</td> <td>19,400,000원</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40%</td> <td>29,400,000원</td> </tr> </tbody> </table>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5억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원 초과	40%	29,400,000원	<p>○ 퇴직급여액</p> <p>○ 퇴직소득금액(㉗)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p> <p>○ 근속연수공제(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근속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년 이하</td> <td>근속연수×30만원</td> </tr> <tr> <td>10년 이하</td> <td>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td> </tr> <tr> <td>20년 이하</td> <td>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td> </tr> <tr> <td>20년 초과</td> <td>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td> </tr> </tbody> </table> <p>○ 환산급여(㉙) = (㉗ - ㉘) ÷ 근속연수 × 12</p> <p>○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p> <p style="text-align: center;">&lt;환산급여공제&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환산급여</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8백만원 이하</td> <td>전액 공제</td> </tr> <tr> <td>7천만원 이하</td> <td>8백만원+(㉙-8백만원)×60%</td> </tr> <tr> <td>1억원 이하</td> <td>4천520만원+(㉙-7천만원)×55%</td> </tr> <tr> <td>3억원 이하</td> <td>6천170만원+(㉙-1억원)×45%</td> </tr> <tr> <td>3억원 초과</td> <td>1억5천170만원+(㉙-3억원)×35%</td> </tr> </tbody> </table> <p>○ 퇴직소득산출세액(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p>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㉙-8백만원)×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㉙-7천만원)×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㉙-1억원)×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㉙-3억원)×35%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5억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원 초과	40%	29,400,000원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㉙-8백만원)×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㉙-7천만원)×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㉙-1억원)×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㉙-3억원)×35%																																																					
<p>○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① × 적용비용) + (② × 적용비용)</p> <p>① 종전규정(2015년) 산출세액</p> <p>② 개정규정(2016년) 산출세액</p>	<p style="text-align: center;">&lt;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 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2016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2017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2018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2019년</th> </tr> </thead> <tbody> <tr> <td>종전방식 산출세액</td> <td>80%</td> <td>60%</td> <td>40%</td> <td>20%</td> </tr> <tr> <td>개정방식 산출세액</td> <td>20%</td> <td>40%</td> <td>60%</td> <td>80%</td> </tr> </tbody> </table>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 근속연수 적용방법(2013. 1. 1. 기준 전·후)

- 2013년 이후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계산방식이 다르므로 2012년 이전 근속연수와 2013년 이후 근속연수를 각각 계산해야 함

\* 근속연수 :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 소득세법 제55조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부칙 제22조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계산 사례

■ 사례 1 ■

2003.3.1입사하여 2017.1.31.퇴사하면서 퇴직소득공제 후 퇴직소득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 근속연수 계산

- 전체 근속연수 : 167월 → 13년 9월 → 14년
-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 : 118월 → 9년 10월 → 10년
- 2013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 : 14년 - 10년 = 4

- 따라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은 퇴직소득과세표준의 10년/14년이고,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은 퇴직소득과세표준의 4년/14년임

■ 사례 2 ■

2004.1.1 입사하여 2017.1.31.퇴사하면서 퇴직소득공제 후 퇴직소득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 근속연수 계산

- 전체 근속연수 : 157월 → 13년 1월 → 14년
-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 : 108월 → 9년 → 9년
- 2013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 : 14년 - 9년 = 5년

- 따라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은 퇴직소득과세표준의 9년/14년이고,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은 퇴직소득과세표준의 5년/14년임

④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이연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연퇴직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text{이연퇴직소득세} =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text{퇴직소득금액}}$$

㉡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frac{\text{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text{이연퇴직소득세}} = \frac{\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text{이연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이 경우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는 ㉠에서 ㉡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text{인출퇴직소득 누계액에 대한 세액} = \text{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times \frac{\text{인출퇴직소득 누계액}}{\text{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7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엑셀)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프로그램 > 2017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원천징수 책자(한글파일)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원천 >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안내

## 퇴직소득 계산사례

가.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 (세액이연 없음) : 퇴직소득의 기본계산 구조

홍길동씨는 (주)국세에 2002. 1. 1. 입사하여 2017. 3.28. 퇴사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없었으며, 퇴사 시 지급(2016. 4.10.)받은 퇴직급여는 45,000,000원임.(IRP계좌 이체 없음)

<계산내역>

- 근속연수 계산 : 전체 근속연수 16년(2002.1.1~2017.3.28., 183월)
  -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11년(2002.1.1~2012.12.31., 132월)
  -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5년(16년 - 11년)

### 1.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12,800원

- 1) 퇴직급여액 : 45,000,000
- 2) 근속연수공제 : 8,800,000  
 $4,000,000 + 800,000 \times 6(16년-10년) = 8,800,000$   
 \* 근속연수 15년  $\Leftarrow (171월 \div 12 = 14년3월)$
- 3) 환산급여 : 27,150,000  
 $(45,000,000 - 8,800,000) \div 16(근속연수) \times 12배 = 27,150,000$
- 4) 환산급여별공제 : 19,490,000  
 $8,000,000 + (27,150,000 - 8,000,000) \times 60\% = 19,490,000$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환산급여-8백만원) \times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환산급여-7천만원) \times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times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times 35\%$

- 5) 환산과세표준[3]- 4] = 7,660,000(27,150,000 - 19,490,000)
- 6) 환산산출세액 : 459,600(환산과세표준  $\times$  세율) = 7,660,000  $\times$  6%
- 7) 산출세액 : 612,800  
 ①  $459,600 \times 16(근속연수) \div 12배 = 612,800$

**2.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1,092,000원**

- 1) 퇴직급여액 : 45,000,000
- 2) 퇴직소득공제 : 26,800,000(① + ②)
  - ① 18,000,000 = 45,000,000 × 40%(정률공제)
  - ② 8,800,000 = 4,000,000 + 800,000×6(근속연수-10년)
    - \* 근속연수 16년 ← (183월÷12=15년3월)
- 3) 과세표준 : 18,200,000(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45,000,000 - 26,800,000
- 4) 연평균과세표준 : 1,137,500(과세표준 ÷ 근속연수) = 18,200,000 ÷ 16
- 5) 환산과세표준 : 5,687,500(연평균과세표준 × 5) = 1,137,500 × 5
- 6) 환산산출세액 : 341,250(환산과세표준 × 세율) = 5,687,500 × 6%
- 7) 연평균 산출세액 : 136,500(① + ②)
  - ① 68,250(2012.12.31. 이전) = 1,137,500 × 세율(6%)
  - ② 68,250(2013. 1. 1. 이후) = 341,250 ÷ 5년 (환산산출세액 ÷ 5)
- 8) 산출세액 : 1,092,000(① + ②)
  - ① 750,750(2012.12.31. 이전) = 68,250 × 11년(연평균산출세액 × 근속연수)
  - ② 341,250(2013. 1. 1. 이후) = 68,250 × 5년

**3. 퇴직소득 세액계산(종전규정 산출세액의 60% + 개정규정 산출세액의 40%)**

- 1) 퇴직소득 산출세액 : 900,320원(① + ②)
  - ① 1,092,000(종전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 = 655,200원
  - ② 612,80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 = 245,120원
- 2) 기납부세액 : 0원
- 3) 신고대상세액 : 900,320원
- 4) 차감원천징수세액 : 990,350원(① + ②)
  - ① 소득세 : 900,320원
  - ② 지방소득세 : 90,030원

▣ 2017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엑셀) 이용 방법

퇴직소득 연계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13) 근무처명				(주)국세					
	(14)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15) 퇴직급여				45,000,000		45,000,000			
	(16) 비과세 퇴직급여				-		-			
	(17) 과세대상 퇴직급여(15-16)				45,000,000		45,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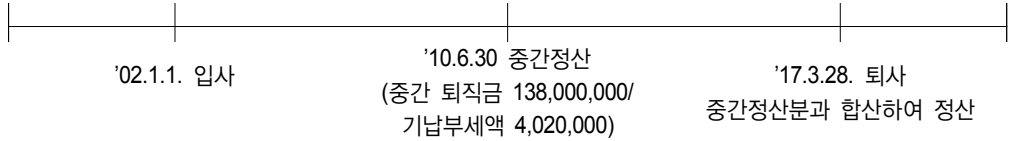
근속연수	구 분	(18) 입사일	(19) 기산일	(20) 퇴사일	(21) 지급일	(22) 근속 월수	(23) 제외 월수	(24) 가산 월수	(25) 중복 월수	(26) 근속 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	-	-	-	0	0		0
	최종	근속연수	2002-01-01	2002-01-01	2017-03-28	2017-04-10	183	0	0	16
	정산	근속연수		2002-01-01	2017-03-28		183	0	0	16
	안 분	2012.12.31.이전	2002-01-01	2002-01-01	2012-12-31		132	0	0	11
	2013. 1. 1. 이후	2013-01-01	2013-01-01	2017-03-28		51	0	0	5	

2016~2019년간퇴직소득세액계산방법  
(\*개정규정및중전규정에따른산출세액에퇴직연도별비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개정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27) 퇴직소득(17)		45,000,000			
		(28) 근속연수공제		8,800,000			
		(29) 환산급여 [(27-28) × 12배 / 정산근속연수]		27,150,000			
		(30) 환산급여별공제		19,490,000			
(31) 퇴직소득과세표준(29-30)		7,660,000					
과세표준 계산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32) 환산산출세액(31 × 세율)		459,600			
		(33) 산출세액(32 × 정산근속연수 / 12배)		612,800			
중전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34) 퇴직소득(17)		45,000,000			
		(35) 퇴직소득정률공제		18,000,000			
		(36) 근속연수공제		8,800,000			
		(37) 퇴직소득과세표준(34-35-36)		18,200,000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합 계	
		(38) 과세표준안분 (37×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12,512,500	5,687,500	18,200,000	
		(39) 연평균과세표준(38/각근속연수)		1,137,500	1,137,500	1,137,500	
		(40) 환산과세표준(39×5배)			5,687,500	5,687,500	
		(41) 환산산출세액(40×세율)			341,250	341,250	
(42)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39)×세율, 13.1.1.이후:(41)/5배)		68,250	68,250	136,500			
(43) 산출세액(42×각 근속연수)		750,750	341,250	1,092,000			
퇴직 소득 세액 계산	(44)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7				
	(45) 퇴직소득산출세액 (33×퇴직연도별비율)+[(43×(100%-퇴직 연도별비율)]		900,320				
	(46)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				
	(47) 신고대상세액(45 - 46)		900,320				

나. 중간지급을 합산하는 경우(세액이연 없음)

홍길동씨는 (주)국세에 2002. 1. 1. 입사하여 2017. 3.28. 퇴사하면서 기 중간정산 분(2010. 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 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2017. 4.10.)받은 퇴직급여는 45,000,000원임(IRP계좌 이체 없음).



<계산내역>

- 근속연수 계산 : 전체 근속연수 16년(2002.1.1~2017.3.28., 183월)  
                   2012.12.31.이전 근속연수 11년(2002.1.1~2012.12.31., 132월)  
                   2013. 1. 1.이후 근속연수 5년(16년 - 11년)

1.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10,690,400

- 1) 퇴직급여액 : 138,000,000 + 45,000,000 = 183,000,000
- 2) 근속연수공제 : 8,800,000  
     ① 4,000,000 + 800,000 × 6(16년-10년) = 8,800,000  
     \* 근속연수 16년 ⇐ (183월+12=15년3월)
- 3) 환산급여 : 130,650,000  
     ① (183,000,000 - 8,800,000) ÷ 16(정산근속연수) × 12배 = 130,650,000
- 4) 환산급여별공제 : 75,492,500  
     ① 61,700,000 + (130,650,000-100,000,000) × 45% = 75,492,500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환산급여-8백만원) ×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환산급여-7천만원) ×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 5) 환산과세표준[3- 4] : 55,157,500(환산급여 - 환산급여별공제)
- 6) 환산산출세액 : 8,017,800(환산과세표준 × 세율)
- 7) 산출세액 : 10,690,400
  - ①  $8,017,800 \times 16(\text{정산근속연수}) \div 12\text{배} = 10,690,400$

**2.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7,820,625원**

- 1) 퇴직급여액 :  $138,000,000 + 45,000,000 = 183,000,000$
- 2) 퇴직소득공제 :  $82,000,000(\text{①} + \text{②})$ 
  - ①  $73,200,000 = 183,000,000 \times 40\%(\text{정률공제})$
  - ②  $8,800,000 = 4,000,000 + 800,000 \times 6(\text{근속연수}-10\text{년})$   
\* 근속연수 16년  $\Leftarrow (183\text{월}+12=15\text{년}3\text{월})$
- 3) 과세표준 :  $101,000,000(\text{퇴직급여액} - \text{퇴직소득공제})$
- 4) 연평균과세표준 :  $6,312,500(\text{과세표준} \div \text{근속연수})$
- 5) 환산과세표준 :  $31,562,500(\text{연평균과세표준} \times 5)$
- 6) 환산산출세액 :  $3,654,375(\text{환산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7) 연평균 산출세액 :  $1,109,625(\text{①} + \text{②})$ 
  - ①  $378,750(2012.12.31. \text{이전}) = 6,312,500 \times \text{세율}(6\%)$
  - ②  $730,875(2013. 1. 1. \text{이후}) = 3,654,375 \div 5 (\text{환산산출세액} \div 5)$
- 8) 산출세액 :  $7,820,625(\text{①} + \text{②})$ 
  - ①  $4,166,250(2012.12.31. \text{이전}) = 378,750 \times 11(\text{연평균산출세액} \times \text{근속연수})$
  - ②  $3,654,375(2013. 1. 1. \text{이후}) = 730,875 \times 5$

**3. 퇴직소득 세액계산(종전규정 산출세액의 60% + 개정규정 산출세액의 40%)**

- 1) 퇴직소득 산출세액 :  $8,968,535(\text{①} + \text{②})$ 
  - ①  $7,820,625(\text{종전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60\% = 4,692,375$
  - ②  $10,690,400(\text{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40\% = 4,276,160$
- 2) 기납부세액 : 4,020,000
- 3) 신고대상세액 :  $4,948,535(= 8,968,535 - 4,020,000)$
- 4) 차감원천징수세액 :  $5,443,380(\text{①} + \text{②})$ 
  - ① 소득세 : 4,948,530
  - ② 지방소득세 : 494,850

▣ 2017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엑셀) 이용 방법

퇴직연금연액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13) 근무처명		㈜국세	㈜국세						
	(14)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123-81-12345						
	(15) 퇴직급여		138,000,000	45,000,000	183,000,000					
	(16) 비과세 퇴직급여		-	-	-					
	(17) 과세대상 퇴직급여(15-16)		138,000,000	45,000,000	183,000,000					

근속연수	구 분	(18) 입사일	(19) 기산일	(20) 퇴사일	(21) 지급일	(22) 근속월수	(23) 제외월수	(24) 가산월수	(25) 중복월수	(26)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2002-01-01	2010-06-30		102	0	0		9
	최종 근속연수	2002-01-01	2010-07-01	2017-03-28	2016-04-10	81	0	0		6
	정산 근속연수		2002-01-01	2016-03-28		183	0	0	0	16
	안 분	2012.12.31.이전	2002-01-01	2002-01-01	2012-12-31		132	0	0	
	2013. 1. 1. 이후	2013-01-01	2013-01-01	2016-03-28		51	0	0		5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규정에 따른 계산표준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27) 퇴직소득(17)		183,000,000		
		(28) 근속연수공제		8,800,000		
		(29) 환산급여 [(27-28) × 12배 / 정산근속연수]		130,650,000		
		(30) 환산급여별공제		75,492,500		
(31) 퇴직소득과세표준(29-30)		55,157,500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32) 환산산출세액(31 × 세율)		8,017,800			
	(33) 산출세액(32 × 정산근속연수 / 12배)		10,690,400			
종전규정에 따른 계산표준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34) 퇴직소득(17)		183,000,000		
		(35) 퇴직소득정률공제		73,200,000		
		(36) 근속연수공제		8,800,000		
	(37) 퇴직소득과세표준(34-35-36)		101,000,000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합 계
		(38) 과세표준안분 (37×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69,437,500	31,562,500	101,000,000
		(39) 연평균과세표준(38/각근속연수)		6,312,500	6,312,500	6,312,500
		(40) 환산과세표준(39×5배)			31,562,500	31,562,500
		(41) 환산산출세액(40×세율)			3,654,375	3,654,375
(42) 연평균산출세액 (12.12.31. 이전:(39)×세율, 13.1.1. 이후:(41)/5배)			378,750	730,875	1,109,625	
(43) 산출세액(42×각 근속연수)		4,166,250	3,654,375	7,820,625		
퇴직소득세액계산	(44)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7			
	(45) 퇴직소득세산출세액 (33×퇴직연도별비율)+[(43×(100%-퇴직연도별비율))]		8,968,535			
	(46)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4,020,000			
	(47) 신고대상세액(45 - 46)		4,948,535			



다. 당해 연도 다른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세액이연 있음)

홍길동씨는 (주)국세에 2002.01.01 입사하여 2017.03.28 퇴사하면서 퇴직급여 130,000,000원을 IRP로 이체받았으며, (주)세금에서 2004.01.01. 입사하여 2017.06.30. 퇴사하면서 퇴직급여 120,000,000원을 IRP계좌로 이체받았고 (주)세금에서 (주)국세를 합산하려고 함

① (주)국세 |-----| 130,000,000  
 '02.1.1. 입사 |-----| '17.3.28. 퇴사(IRP 이체)

② (주)세금 |-----| 120,000,000  
 '04.1.1. 입사 |-----| '17.6.30. 퇴사(IRP 이체)

<계산내역>

- 근속연수 계산 : 전체 근속연수 16년(2002.1.1~2017.6.30., 186월)  
 2012.12.31.이전 근속연수 11년(2002.1.1.~2012.12.31., 132월)  
 2013. 1. 1.이후 근속연수 5년(16년 - 11년)

\* 중복월수 159월 있음

1. (주)국세에서 퇴사 시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급여환원액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 종		정 산			
	(13) 근무처명					(주)국세				
(14)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15) 퇴직급여			-		130,000,000		130,000,000			
(16) 비과세 퇴직급여			-		-		-			
(17) 과세대상 퇴직급여 (15-16)			-		130,000,000		130,000,000			

근속연수	구 분		(18) 입사일	(19) 기산일	(20) 퇴사일	(21) 지급일	(22) 근속월수	(23) 제외월수	(24) 가산월수	(25) 중복월수	(26)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0	0	0	
최종 근속연수			2002-01-01	2002-01-01	2017-03-28	2017-04-10	183	0	0		16
정산 근속연수				2002-01-01	2017-03-28		183	0	0	0	16
안분	2012.12.31. 이전		2002-01-01	2002-01-01	2012-12-31		132	0	0		11
	2013. 1. 1. 이후		2013-01-01	2013-01-01	2017-03-28		51	0	0		5

2016~2019년간퇴직소득세액계산방법

(\* 개정규정및종전규정에따른산출세액에퇴직연도별비용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개정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27) 퇴직소득(17)			130,000,000
	(28) 근속연수공제			8,800,000	
	(29) 환산급여 [(27-28) × 12배 / 정산근속연수]			90,900,000	
	(30) 환산급여별공제			56,695,000	
	(31) 퇴직소득과세표준(29-30)			34,205,000	
세액계산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32) 환산산출세액(31 × 세율)			4,050,750
		(33) 산출세액(32 × 정산근속연수 / 12배)			5,40,1000

제1장 원천징수 개요

연간정액 특별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계산내용				금액			
		(34) 퇴직소득(17)				130,000,000			
		(35) 퇴직소득정률공제				52,000,000			
		(36) 근속연수공제				8,800,000			
		(37) 퇴직소득과세표준(34-35-36)				69,200,000			
	세액 계산	계산내용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합계	
		(38) 과세표준안분 (37×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47,575,000	21,625,000	69,200,000	
		(39) 연평균과세표준(38/각근속연수)				4,325,000	4,325,000	4,325,000	
		(40) 환산과세표준(39×5배)					21,625,000	21,625,000	
		(41) 환산산출세액(40×세율)					2,163,750	2,163,750	
(42)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39)×세율, 13.1.1.이후:((41)/5배)				259,500	432,750	692,250			
(43) 산출세액(42×각 근속연수)				2,854,500	2,163,750	5,018,250			
퇴직소득 세액계산	(44)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7				
	(45) 퇴직소득세산출세액 (33×퇴직연도별비율)+[(43×(100%-퇴직연도별비율)]				5,171,350				
	(46)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				
	(47) 신고대상세액(45 - 46)				5,171,350				
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	(48) 신고대상 세액(47)	연금계좌 입금명세				(50) 퇴직급여 (17)	(51) 이연 퇴직소득세 (48×49/50)		
	5,138,537	연금계좌 취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 번호	입금일			(49) 계좌 입금금액	
		국세연금	111-81-11111	123123	2017-04-10	130,000,000		130,000,000	
	(52) 합계					130,000,000	5,171,350		
납 부 명 세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53) 신고대상세액(47)		5,171,350	517,135	-	5,688,485			
	(54) 이연퇴직소득세(51)		5,171,350	517,135	-	5,688,485			
	(55) 차감원천징수세액(53-54)		-	-	-	-			

2. (주)세금에서 퇴사 시 이연퇴직소득세 계산(합산하여 정산)

퇴직 연금 환 산	근무처구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13) 근무처명	㈜국세			㈜세금					
	(14)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123-81-54321					
	(15) 퇴직급여	130,000,000			120,000,000		250,000,000			
	(16) 비과세 퇴직급여	-			-		-			
(17) 과세대상 퇴직급여 (15-16)	130,000,000			120,000,000		250,000,000				
근 속 연 수	구분	(18) 입사일	(19) 기산일	(20) 퇴사일	(21) 지급일	(22) 근속 월수	(23) 제외 월수	(24) 가산 월수	(25) 중복 월수	(26) 근속 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2002-01-01	2002-01-01	2017-03-28	2017-04-10	183	0	0		16
	최종 근속연수	2004-01-01	2004-01-01	2017-06-30	2017-07-10	162	0	0		14
	정산 근속연수		2002-01-01	2017-06-30		186	0	0		159
	안분	2012.12.31. 이전	2002-01-01	2002-01-01	2012-12-31		132	0	0	
	2013. 1. 1. 이후	2013-01-01	2013-01-01	2017-06-30		54	0	0		5

2016~2019년간퇴직소득세액계산방법

(※ 개정규정및종전규정에따른산출세액에퇴직연도별비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개정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계산	계산내용		금액				
		(27) 퇴직소득(17)			250,000,000			
		(28) 근속연수공제			8,800,000			
		(29) 환산급여 [(27-28) × 12배 /정산근속연수]			180,900,000			
		(30) 환산급여별공제			98,105,000			
		(31) 퇴직소득과세표준(29-30)			82,795,000			
과세표준계산	세액계산	계산내용		금액				
		(32) 환산산출세액(31 × 세율)			14,650,800			
		(33) 산출세액(32 × 정산근속연수 / 12배)			19,534,400			
개정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계산	계산내용		금액				
		(34) 퇴직소득(17)			250,000,000			
		(35) 퇴직소득정률공제			100,000,000			
		(36) 근속연수공제			8,800,000			
		(37) 퇴직소득과세표준(34-35-36)			141,200,000			
	세액계산	계산내용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합계		
		(38) 과세표준안분 (37×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97,075,000	44,125,000	141,200,000	
		(39) 연평균과세표준(38/각근속연수)			8,825,000	8,825,000	8,825,000	
		(40) 환산과세표준(39×5배)				44,125,000	44,125,000	
		(41) 환산산출세액(40×세율)				5,538,750	5,538,750	
	(42)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39)×세율, 13.1.1.이후:((41)/5배)			529,500	1,107,750	1,637,250		
	(43) 산출세액(42×각 근속연수)			5,824,500	5,538,750	11,363,250		
퇴직소득세액계산	(44)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7				
	(45) 퇴직소득세산출세액 (33×퇴직연도별비율)+[(43×(100%-퇴직연도별비율))]			14,631,710				
	(46)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5,171,350				
	(47) 신고대상세액(45 - 46)			9,460,360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48) 신고대상세액(47)	연금계좌 입금명세				(49) 계좌입금금액	(50) 퇴직급여(17)	(51) 이연퇴직소득세(48×49/50)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9,460,360	국세연금	111-81-11111	123123	2017-07-10	120,000,000	250,000,000	9,460,360
		국세연금	111-81-11111	123123	2017-04-10	130,000,000		
	(52) 합계			250,000,000				
기타명세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53) 신고대상세액(47)	9,460,360	946,036	-	10,406,396			
	(54) 이연퇴직소득세(51)	9,460,360	946,036	-	10,406,396			
	(55) 차감원천징수세액(53-54)	-	-	-	-			

#### 4) 사업소득 원천징수

##### 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강사,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 봉사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 ②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 전체와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 소득자와 사업소득자만(이들의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자 포함) 해당
- 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비영리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 ③ 원천징수 세율 : 지급금액의 3%(봉사료는 지급금액의 5%)

##### 주의사항

사업소득을 부서단위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각 부서별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④ 사업소득연말정산

###### 가. 연말정산대상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사업 개시자 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함. 다만 ②,③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나.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 방문판매수당 등·음료품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 가능
-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연말정산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봄

- 1월~11월분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

### 5)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함

- 상금, 포상금, 당첨금품, 슬롯머신·사해행위 이익,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유실물습득 보상금
-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사례금,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원고료, 인세, 문예창작수입, 강연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 저작권·방송필름·특허권·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 및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
- 물품 또는 장소의 일시적·대여에 따른 사용료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조각 제외) 등
-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연 300만원 초과 금액)

#### ① 필요경비 : 지급증명이 있는 소요된 경비

단,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증명이 없어도 80% 또는 90%를 필요경비 인정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자 입증 필요)

필요경비 특례	기타소득 종류
받은 금액의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li> <li>• 산업재산권 등, 지역권·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li> <li>•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li> <li>•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li> <li>•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li> <li>•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임주 지체상금</li> <li>•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서화·골동품 양도소득</li> </ul>
받은 금액의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서화·골동품 양도소득</li> </ul>

\*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외부인이 학교 등에서 3개월 이상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해당학교 교사), 직업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외부인 강사), 기타소득(일시적)으로 원천징수

②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 지급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사례)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 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 집필·시험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로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예) 강연료 20만원 지급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 기타소득금액 4만원 = 20만원 - 20만원 × 80%(과세최저한에 해당)

③ 주의 사항

기타소득을 부서단위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각 부서별 기타소득 지급내역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야함

6)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다르고 신고납부 절차도 다르므로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특히,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등 소득귀속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①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가. 독립성

사업자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계속·반복성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에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다. 영리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직업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실무상 유의사항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계속적·반복적” 여부이며 소득귀속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수차례, 수개월 또는 다수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직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함
- 가령 1~2개월 단기간에 인적용역을 제공했다라도 사업성을 띠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한두번 우연한 기회에 영리목적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사후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체적인 구분 사례는 아래를 참조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소득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③ 사업소득으로 구분가능한 주요 기타소득

가. 강연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9)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

구 분	소득 종류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사례) 고문료

구 분	소득 종류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사례) 교수 등의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대학교수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연구용역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의 주체와 관리방식에 따라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은 달라짐

- ㉓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는 교수 등의 소득구분(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연구비 : 기타소득
  -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 등이 받는 연구비 : 기타소득
  - 고용관계에 있는 연구원 등이 받는 급여 : 근로소득
- ㉔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비를 관리(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연구원 등에게 인건비 지급시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리

나. 특허권 등의 양도 및 대여에 따른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7)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적 목적을 갖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구 분		소득 종류
특허권 등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하고 받는 대가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특허권 대여하고 받는 대가	기타소득
영업권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고 받는 소득	양도소득

다. 문예창작수입(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5)

(사례) 문예창작소득

구 분	소득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li> <li>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만화, 삽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li> <li>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li> </ul>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li> <li>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현상모집에 응하고 지급받는 상금 등</li> <li>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li> </ul>	기타소득

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6)

(사례) 알선수수료 소득

구 분	소득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의 알선수수료</li> <li>• 부동산 중개 알선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의 매매알선 수수료</li> <li>• 부동산중개업자(법인 포함)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에 대출알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li> </ul>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의 알선수수료</li> <li>•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지급받는 매매알선 수수료</li> </ul>	기타소득

### 7) 이자소득(가지급금 관련) 원천징수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으로 귀속자에게 상여 등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여금 약정을 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다.
-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하고 있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9의2호에 따른 수입시기(귀속시기)와 동일하다.
  - 즉,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지급시기와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다.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법인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정상적으로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 사업연도(법령 제70조)

-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 시기(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이자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 전에 결산서 상 기간 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고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하여야 함.

- 원천징수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위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적용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원천징수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까지 미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대표자 등으로 소득자를 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5%(비영업대금이익)를 적용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징수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 8) 연금소득 원천징수

### ① 연금소득 종류

-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 2013년 이후 분리과세 제외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함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나.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다음의 소득(사적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퇴직소득과세이연분)
- 연금계좌 자기불입분으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은 금액
- 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말함

### ② 연금소득 종합소득 신고 예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나 분리과세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 있는 경우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함

### ③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공적연금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 따라 소득세율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 사적연금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아래의 ㉠ 및 ㉡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나 이(연금수령일 현재)	세 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후 수령	3%

나.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100분의 4

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소법 §129 ① 5의 3호)

\* 20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유도 하기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 30% 상당액을 경감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times 7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란?

-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해당 연금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소령 §187의 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액

$$= \text{이연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연금수령액}}{\text{이연퇴직소득}} \times 7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영 §202의2)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영 §202의2②).

$$\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 ㉠ 위 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인출퇴직소득 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함

\* 이연퇴직소득세란?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는 금액}}{\text{퇴직소득금액}}$$

- ㉡ 위 산식 ㉠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영 §202의2③).

$$\text{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times \frac{\text{인출퇴직소득 누계액}}{\text{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전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여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였으나, 2013.1.1. 이후분부터 사적연금소득에 한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가능(공적연금 소득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에서 제외)

④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소득세법 §143의4)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함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2015년 이후)>

□ 연금수령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법 §20의3 2호 가목)		연금소득	종합과세 <sup>1)</sup> 분리과세 <sup>2)</sup>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연금 저축 계좌 원천	세액공제 (소법 §20의3 2호 나목)			※ 중복 시 유리한 세율 적용 ○ 연령 요건 - 70세 미만 : 5% -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종신형 연금보험 : 4% -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운용수익 (소법 §20의3 2호 다목)			

- 1)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분리과세 제외)  
 2) ① 이연퇴직소득 ②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  
 ③ ①·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외수령

소득의 원천		연금외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법 §20의3 2호 가목)		퇴직소득	분류과세	연금외수령세율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연금 저축 계좌 원천	세액공제 (소법 §20의3 2호 나목)	기타소득 <sup>1)</sup>	분리과세	15%
운용수익 (소법 §20의3 2호 다목)					

- 1)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본인·가족의 3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 14. 2017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구 분	2016년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p>○ 소득세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4,600만원</td> <td>15%</td> </tr> <tr> <td>4,600~8,800만원</td> <td>24%</td> </tr> <tr> <td>8,800~1억5천만원</td> <td>3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td> <td>38%</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p>○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4,600만원</td> <td>15%</td> </tr> <tr> <td>4,600~8,800만원</td> <td>24%</td> </tr> <tr> <td>8,800~1억5천만원</td> <td>3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td> <td>38%</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40%</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액 조정	<p>○ 연금계좌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400만원</li> <li>-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li> </ul>	<p>○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li> <li>- (좌 동)</li> </ul>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p>○ 출생·입양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출생·입양신고한 거주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li> <li>-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li> </ul>	<p>○ 출생·입양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li> <li>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li> </ul> </li> <li>※ 첫째 출생·입양시 30만원</li> </ul>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p>○ 의료비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li> <li>- 공제한도: 700만원</li> <li>*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li> <li>- 세액공제율: 15%</li> </ul>	<p>○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세액공제율: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li> </ul>																										

구 분	2016년	2017년
<p>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li> <li>-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li> <li>- &lt;추가&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li> <li>- (좌 동)</li> <li>- 체험학습비*(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li> <li>*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li> </ul>
<p>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비 세액공제</li> <li>-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세액공제(15%)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li> <li>- (좌동)</li> <li>-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li> <li>·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li> <li>· (제외금액) 생활비 대출금,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감면액 등</li> <li>※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 제외</li> </ul>
<p>직무발명 보상금 과세기준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범위</li> <li>-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li> <li>- &lt;추 가&gt;</li> <li>○ 비과세 범위(기타소득)</li> <li>-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li> <li>- (좌동)</li> <li>-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li> <li>※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li> <li>○ 비과세 범위 보완(근로소득)</li> <li>-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li> <li>※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비과세</li> </ul>

구 분	2016년	2017년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li> <li>- 주주가 아닌 임원</li> <li>-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li> <li>- &lt;추가&gt;</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동)</li> <li>-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li> </ul> </li> </ul>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300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 (’18년 이후 25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body> </table> </li> </ul>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1.2억원 이하	300만원 (’18년 이후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1.2억원 이하	300만원 (’18년 이후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중고자동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화·용역 구입액</li> <li>-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li> </ul> </li> </ul>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세세액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li> <li>-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li> <li>-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li> </ul> </li> </ul>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고령자, 장애인</li> <li>- &lt;추 가&gt;</li> </ul> </li> <li>○ 감면율 : 70%(연 15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경력단절 여성</li> </ul> </li> <li>○ 감면율 : 70%(연 15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li> </ul> </li> </ul>								
근로장려금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 차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삭제&gt;</li> </ul> </li> </ul>								

구 분	2016년	2017년								
<p>외국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적용기간)</b>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 (다만, '16.12.31.까지만 적용)</li> <li>*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li> <li>- <b>(특례내용)</b> 종합과세 대신 <b>17%</b> 단일세율 선택 허용</li> <li>- 적용기한 : 2016.12.3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세율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적용기간)</b>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li> <li>*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18.12.31.까지 적용</li> <li>- <b>(특례내용)</b> 종합과세 대신 <b>19%</b> 단일세율 선택 허용</li> <li>- 적용기한 : 2018.12.31.</li> </ul> </li> </ul>								
<p>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한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300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li>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60%;">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th> <th style="width: 40%;">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td> <td>500만원</td> </tr> <tr> <td>4천만원 ~ 1억원</td> <td>300만원</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ul>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p>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가산세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부금 납입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li> <li>-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li> <li>* 납입원금 누계액의 2%</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li> <li>- &lt;삭 제&gt;</li> </ul>								
<p>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li> <li>-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li> <li>- (좌동)</li> </ul> </li> </ul>								
<p>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 (3개월 이내 제출 시 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율 50%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b>1%</b> (3개월 이내 제출 시 <b>0.5%</b>)</li> <li>※ '1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li> </ul> </li> </ul>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

항 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구 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 인	×	×
			배 우 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 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 애 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 녀 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 부 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 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 별 소득공제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 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전 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 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특 별 소득공제	주 택 자 금	① 주택임차 차 입 금 원 리 금 상환액등	<p>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p> <p>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 으로부터 연 1,000분의 1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p> <p>- 연 300만원 한도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p>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p>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p> <p>*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p> <p>&lt;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일 등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li> <li>-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li> </ul> <p>&lt;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gt;</p> <p>⇒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1.1. 이후 차입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500만원 (만기 15년 이상 + 기타 상환방식)</li> <li>· 연 300만원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li> <li>· 연 1,500만원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li> <li>· 연 1,800만원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li> </ul> </li> <li>- '12.1.1. 이후 차입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li> </ul> </li> <li>- '11.12.31 이전 차입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li> </ul> </li> <li>-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li> </ul> </li> </ul>
	기부금 (이월분)	해당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2013년 이전 지출 기부금(법정, 지정) 중 해당 과세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항 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300·200 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7천만원 초과자는 '17년 납입분까지 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조합· 벤처기업 출자 [100%·50%·30% (2015년 이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공제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16년 귀속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중고차 신용카드 등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 금액에 포함 - 300만원(총급여 1.2억원 초과 : 200만원)과 총 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항 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공제한도 :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8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 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2014년 이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감면 ·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 소득세 70% (50%, 10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 '14.1.1., 경력단절 여성 : '17.1.1.) ~ '18.12.31.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 부터 3년간(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 70%(50%, 100%)* 세액감면 <b>*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감면 한도 150만원)</b> - '16.1.1.~'18.12.31.까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b>*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감면 한도 없음)</b> - '14.1.1.~'15.1.1.까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b>*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감면 한도 없음)</b>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항 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 ·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 녀	공제대상 자녀	-	1명(연 15만원), 2명(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 금 계 좌	과학기술인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300만원*)] × 12%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특 별 세 액 공 제	보 험 료	보장성	납입액(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납입액(100만원 한도) × 15%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 료 비	㉠ 본인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 20%)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 65세 이상	*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 제외)	
		㉢ 장애인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 난임 시술비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 ·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1 :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항 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 · 세액공제	의 료 비	① 그 외 부양가족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의료비 공제대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lt; 총급여액 3%</td> <td>(가+나+다+라) - (총급 여액 3% - ①)</td> </tr> <tr> <td>① &gt; = 총급여액 3%</td> <td>(가+나+다+라) + 적은 금액 [( ① - 총급 여액 3%), 700만원]</td> </tr> </tbody> </table> <p>※ 가, 나, 다, 라, ①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p>	구 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가+나+다+라) - (총급 여액 3% - ①)	① > = 총급여액 3%	(가+나+다+라) + 적은 금액 [( ① - 총급 여액 3%), 700만원]
		구 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가+나+다+라) - (총급 여액 3% - ①)								
	① > = 총급여액 3%	(가+나+다+라) + 적은 금액 [( ① - 총급 여액 3%), 700만원]								
	특 별 세 액 공 제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 후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 고생 50만원 이내, 체험 학습비(30만원 이내)						
대학생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교육비,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 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 · 세액공제	특별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세액 공제	기부금	법정기부금		· 2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2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 법정·지정기부 금을 합하여 계산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별도)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공제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30% ·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10%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30% ·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 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제외),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항 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 ·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 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농특세 납부 대상)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거주자의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지급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인 근로 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 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17.3.10.>

(8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 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I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 분	주(현)	중(전)	중(전)	⑩-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⑮-계							
II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⑱ 국외근로	MOX					
	⑱-1 야간근로수당	OOX					
	⑱-2 출산·보육수당	QOX					
	⑱-4 연구보조비	HOX					
	⑱-5						
	⑱-6						
	~						
	⑱-25						
	⑲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III 세 액 명 세	구 분			㉘ 소 득 세	㉙ 지방소득세	㉚ 농어촌특별세	
	㉗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㉛ 중(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 록 번 호				
		㉜ 주(현)근무지					
	㉝ 납부특례세액						
㉞ 차 감 징 수 세 액(㉗-㉛-㉜-㉝)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div> 세 무 서 장 귀하							

(8쪽 중 제2쪽)

IV 정산 명세	21 총급여(16,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22 근로소득공제		49 산출세액					
	23 근로소득금액		50 「소득세법」					
	기본 공제	24 본 인	세 액 감 면	51 「조세특례제한법」(53 제외)				
		25 배 우 자		5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6 부 양 가 족( 명)		53 조세조약				
	추가 공제	27 경 로 우 대( 명)	54 세액감면 계	55 근로소득				
		28 장 애 인( 명)		56 자녀				
		29 부 녀 자		공제대상자녀 ( 명)				
	연금 보험 료 공제	30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 명)	출산·입양자 ( 명)				
		31 국민연금보험료						
		32 ① 공무원연금						
		② 전 국민연금						
	총 합 소 득 공 제	33 보험료	①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세 액 별 세 액 공 제				
			② 고용보험료					
		34 주택 자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부담 상환액		대출기관	57 과학기술인공제		
					거주자		공제대상금액	
			② 장기 주택 저당 차입 금 이자 상환 액		2011년 이 전 차입분		15년 미만	세액공제액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15년~29년	공제대상금액
		35 기부금(이월분)	① 2015년 이후 차입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차상환 대출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30년 이상		공제대상금액	
			② 2015년 이후 차입분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차상환 대출	59 연금지축	공제대상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차상환 대출	세액공제액
	36 계	③ 2015년 이후 차입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차상환 대출	60 보험료				
			10년 ~ 15년		보장성			
그 밖 의 소 득 공 제	37 차 감 소 득 금 액	장애인전용	공제대상금액					
	38 개인연금저축	61 의료비	세액공제액					
			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대상금액				
	40 주택 마련저축	62 교육비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① 청약저축	세액공제액			
	41 투자조합출자 등	63 기 부 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10만원 초과			
	42 신용카드등 사용액	64 계	65 표 준 세 액 공 제	공제대상금액				
				③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세액공제액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66 납세조합공제	67 주택차입금	공제대상금액				
				④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세액공제액			
	4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68 외국납부	69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액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70 세액공제 계	71 결 정 세 액(49-54-70)	공제대상금액				
				⑥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세액공제액			
46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8쪽 중 제3쪽)

⑦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성 명	기본 공제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 험 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 녀 자	한 부 모			장 애 인	6세 이하	건강 고용 등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직불카드등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국세청												
					기타												
0	(근로자 본인)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작성 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ISO국가코드: 국제전화페이지→국제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KR, 미국: US
-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를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를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업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일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일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I.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용 항목이 많은 경우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⑫ 비과세소득 계"란 및 "⑫-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II. 비과세 소득"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⑩-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⑦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포함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⑫ 총급여"란에는 "⑫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별"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⑫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⑬~⑮)"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⑯~⑳)"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금계좌(㉑~㉓)"란과 "특별세액공제(㉔~㉖)"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8쪽 중 제4쪽)

작성 방법

10. ㉗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㉘ 주택자금공제(㉗+㉘), 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㉚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㉗+㉘+㉚), ㉛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㉝ 우리나라주요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㉞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11. ㉟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㊱ 차감소득금액에서 ㊲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㊳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용된다.
12. ㊴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용한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7%)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㊵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용한다.
15. ㊶ 소득·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용한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용한다).

바.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용한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용한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㉟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19. ㊶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용한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 과 세	소득세법§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12 3 아	G01	⑱-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세법§12 3 자		H01	⑱-9	소득령§12 1(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득령§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제복 등)	×	
			H05	⑱-18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⑱-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⑱-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⑱-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⑱-4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⑱-4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⑱-22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⑱-23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⑱-6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H12	⑱-7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H13	⑱-8		소득령§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⑱-26		소득령§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소득세법§12 3 차	I01	⑱-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호환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12 3 파	K01	⑱-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하	L01			중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제기간의 급여	×	
		M01	⑱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군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⑱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군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소득세법§12 3 거	M03	⑱		소득령§16①2(국외군로)	○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12 3 더	O01	⑱-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12 3 머	Q01	⑱-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12 3 서	R10	⑱-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12 3 어	R11	⑱-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구 조특법§ 15	S01	⑱-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⑥	Y02	⑱-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⑱-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⑱-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12 3 자	Y22	⑲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조특법§18	T01	⑱-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조특법§30	T10	⑱-24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100%)	○		
	T11	⑱-25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50%)	○		
	T12	⑱-26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		
조세조약	T20	⑱-25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8쪽 중 제6쪽)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 작성 방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월세액 · [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상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주택유형	⑩ 주택계약 면적(m <sup>2</sup> )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 소 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⑳ 공제금액
				㉑ 계	㉒ 원금	㉓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㉔ 임대인 성명(상호)	㉕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㉖ 주택유형	㉗ 주택계약 면적(m <sup>2</sup> )	㉘ 임대차계약서 상 주 소 지	㉙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㉚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㉖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 ㉙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성 방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 · 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 · 원리금상환액과 소득 · 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㉖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㉚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 제 2 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과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호 참조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주요 개정 사항

- (2017년) ○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코드(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신설
  - '18.1.1.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작성
- 거주자 이자·배당소득 부표 코드 **신설**(C60, C93 : ISA계좌 관련)
- 거주자 이자·배당소득 부표 코드 **삭제**(법령 폐지 등 적용기한 종료)
  - C04, C28, C31, C34, C36, C37, C38, C52,
- (2016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A05(연말정산 분납신청), A06(연말정산 납부금액) 코드 신규 추가 →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분납신청 시 작성
-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7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상 C59, C69 코드(2016년 7월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 신규 추가

### 1. 작성기준

#### ① 작성대상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납세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제출자
개 인	개 인		주된 사업장 소재지	개 인
법 인	일반적인경우	본점 또는 지점(독립채산제)	해당 사업장 소재지	해당 사업장
	본점일괄납부	본점일괄납부 본점 또는 해당 지점	본점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본점
	사업자단위등록	본 점	본점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본점

- ※ 국가 및 법인의 경우 본점(본부)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 본점일괄납부시 지급명세서 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점 또는 해당 지점으로 하여 본점에서 제출

② 작성기준

- 해당 소득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사 례) '17년 3월 급여, 4월 급여를 '17년 4월말에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두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및 소득세 등 납부

구 분	① 신고구분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3월 급여	매월	17년 3월	17년 4월
4월 급여	매월	17년 4월	17년 4월

- 1월~11월분의 급여를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고, 12월분의 급여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시기특례 규정에 따라 1월~11월분은 12월말,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납부

(사 례) '17년 11월 급여와 12월 급여를 '18년 3월말에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두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및 소득세 등 납부

구 분	① 신고구분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11월 급여	매월	17년 11월	17년 12월
12월 급여	매월	17년 12월	18년 2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례 >

- '17.6월분 근로소득 지급 : 10명, 총지급액 35,000천원, 소득세 1,000,000원
- '17.6월분 중도퇴사자 중간정산 : 1명, 총지급액 24,573천원, 소득세 △520,000원(환급)
- '17.6월분 퇴직소득 지급 : 1명, 총지급액 138,000천원, 소득세 6,600,000원
- '17.6월분 기타소득(강사료) 지급 : 1명, 총지급액 300천원, 소득세 12,000원
- '17.6월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 1명, 총지급액 1,600천원, 소득세 400,000원
- 상기 소득에 대해 '17.6.30. 대금 지급

제2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6월	
③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6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b>부</b>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 <b>부</b>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35,000,000	1,000,000					
		중 도 퇴 사	A02	1	24,573,000	△520,000					
		일 용 근 로	A03								
		연 정 산	합 계	A04							
			분 납 신 청	A05							
			납 부 금 액	A06							
	가 감 계	A10	11	59,573,000	480,000			480,000			
	퇴직 소득	연 금 계 좌	A21								
		그 외	A22	1	138,000,000	6,600,000					
		가 감 계	A20	1	138,000,000	6,600,000			6,600,000		
	사업 소득	매 월 징 수	A25								
		연 말 정 산	A26								
		가 감 계	A30								
	기타 소득	연 금 계 좌	A41								
		중 교 인 소 득	매 월 징 수	A43							
			연 말 정 산	A44							
		그 외	A42	1	300,000	12,000					
	가 감 계	A40	1	300,000	12,000			12,000			
	연금 소득	연 금 계 좌	A48								
		공 적 연 금 (매 월)	A45								
연 말 정 산		A46									
가 감 계		A47									
이 자 소 득	A50	1	1,600,000	400,000			400,000				
배 당 소 득	A60										
저 축 해 지 추 징 세 액 등	A69										
비 거 주 자 양 도 소 득	A70										
법 인 내 · 외 국 법 인 원 천	A80										
수 정 신 고 (세 액)	A90										
총 합	A99	14	199,473,000	7,492,000			7,492,000				

②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 급 신 청 액
⑫전월 미환급 세 액	⑬ 기 환 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 탁 재 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 납부세액(⑩,⑪ : 음수 기재 불가)을 납부서에 세목별(근로·퇴직·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로 기재하여 납부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소득	장 기 주 택 마 련 저 축	C01							
	생 계 형 저 축	C02							
	개 인 연 금 저 축	C03							
	장 기 저 축 성 보 험 차 익	C05							
	조 합 등 예 탁 금	C06							
	조 합 등 출 자 금	C07							
	농 어 가 목 돈 마 련 저 축	C08							
	우 리 사 주 배 당 소 득	C10							
	농 업 회 사 법 인 배 당 소 득	C20							
	영 농 · 영 어 조 합 법 인 배 당 소 득	C23							
	재 형 저 축 이 자 · 배 당 소 득	C40							
	개 인 조 합 자 산 관 리 계 좌 이 자 · 배 당 소 득	C60							
	기 타 비 과 세 이 자 소 득	C19							
기 타 비 과 세 배 당 소 득	C29								
이 자 · 배 당 소 득	기 타 이 자 · 배 당 소 득	C11							
	영 농 · 영 어 조 합 법 인 배 당 소 득	C54							
	농 업 회 사 법 인 배 당 소 득	C55							
	부 동 산 집 합 투 자 기 구 등 집 합 투 자 증 권 의 배 당 소 득	C56							
	고 위 험 · 고 수 익 투 자 신 탁 배 당 소 득	C57							
	개 인 조 합 자 산 관 리 계 좌 이 자 · 배 당 소 득	C93							
	세 금 이 자 소 득 (9%)	C12							
배 당 소 득 (9%)	C22								
일 반 세 (14%)	기 타 분 리 과 세 이 자 소 득	C13							
	직 장 공 제 회 초 과 반 환 금 (기 본)	C18							
과 세	부 동 산 집 합 투 자 기 구 등 집 합 투 자 증 권 의 배 당 소 득	C58							
	기 타 분 리 과 세 배 당 소 득	C39							
일 반 과 세	이 자 소 득	C14							
	배 당 소 득	C24							
고 배 당 기 업	배 당 소 득 ( 9 % )	C91							
	배 당 소 득 ( 2 5 % )	C92							
비 실 명 소 득	비 실 명 이 자 소 득	C15							
	비 실 명 배 당 소 득	C25							
비 영 업 대 금 이 익 (25%)	비 영 업 대 금 이 익 (25%)	C16	1	1,600,000	400,000				
	출 자 공 동 사 업 자 (25%)	C26							
이 자 · 배 당 소 득 계		C30	1	1,600,000	400,000			400,000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7%	C59						
해 지 추 징 세 액 등	장 기 주 식 형 저 축	5,2.4.1.2%	C41						
	장 기 주 택 마 련 저 축	4.8%	C42						
	연 금 저 축	2%	C43						
	소 기 업 · 소 상 공 인 공 제 부 금	2%	C44						
	주 택 청 약 조 합 저 축	6%	C45						
	장 기 집 합 투 자 증 권 저 축	6%	C46						
해 지 추 징 계		C50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 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거주자 (개인)	이	자	제한, 20%	C61							
	배	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 용역	20%	C64							
		사 용 료	제한, 20%	C65							
	양도	유 가 증 권 양 도	10%, 20%	C66							
		부 동 산 양 도	10%, 20%	C67							
	기	타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7%	C69							
	비 거 주 자 계			C70							
내국법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이	자	14%	C71							
	투	자 신 탁 의 이 익	14%	C72							
	신	탁 재 산 분 배	14%	C73							
	신	탁 업 자 징 수 분	14%	C74							
	비	영 업 대 금 의 이 익(25%)		C75							
	비	과 세 소 득		C76							
	이	자	제한, 20%	C81							
	배	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 용역	20%	C84								
	사 용 료	제한, 20%	C85								
	유 가 증 권 양 도	10%, 20%	C86								
	부 동 산 양 도	10%, 20%	C87								
기	타	20%	C88								
법 인 세 계			C90								

210mm× 297mm(백상지 80g/m<sup>2</sup>)



## 2. 기본사항

### ① 신고구분란

①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  
 ※ 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소득처분”에 “○” 표시할 수 없음
-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

원천세 월별 납부자의 경우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 “연말정산”과 “매월분”에 “○”표시를 한다.

-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 “○” 표시하고 ②환급신청액을 표기한 후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해야 함

### ② 귀속연월란

소득발생 연월을 기재한다. 다만,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7년 1월, ×7년 7월)을 기재하고, 「소득처분」의 경우 귀속연월은 대상 소득에 대한 당초 귀속연월,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귀속연월은 2018년 2월(1월)로 기재

### ③ 지급연월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월을 기재한다. 다만,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2017년 6월 또는 12월)을 기재하고,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지급연월은 2018년 2월로 기재한다. 「소득처분」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연월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수정신고일)의 연월을 기재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 방법>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2017년 상반기(1월~ 6월)	지급액(원천징수세액)	2017년 1월	2017년 6월
2017년 하반기(7월~12월)	지급액(원천징수세액)	2017년 7월	2017년 12월

### 3.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 ④ **인원란**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원 수를 기재
  - 반기별납부자 : 간이세액(A01)은 반기의 마지막 달 인원, 중도퇴사(A02)는 반기 중 중도퇴사자 총인원, 일용근로(A03)은 월별 순인원 6개월 합계, 그 외의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기재
  - ※ 인원을 잘못 기재하여 1인당 지급액이 전월대비 큰폭으로 변동할 경우 오류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⑤ **총지급액란** :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
  -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지급액에서 제외하여 기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중 ‘비과세 및 감면소득’ 코드 참조)
  - ※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총지급액 합계와 지급명세서 상 총지급액 합계가 동일해야 함
- **징수세액(⑥~⑧)란**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⑥ 소득세 등(원천징수한 법인세 포함),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별로 해당되는 코드에 맞추어 각 소득 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재한다.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 표시하여 기재
  - ⑧ 가산세 란은 원천징수 대상 세액을 과소납부하거나 지연납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총합계(A99)행의 ⑥~⑧란에 소득별 가감계(A10, A20, A30··)를 합산기재하며, 이때 ⑥소득세 등란에 “△”표시된 세액은 총합계(A99의 ⑥~⑪)란 계산시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합계액은 [2. 환급세액조정 ⑮일반환급란]에 별도로 기재
- 소득세등 징수세액의 총합계가 ⑮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⑮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재하고, 납부세액란에는 △세액이 기재되지 않음
  - \*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은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과 상계내역을 기재

## 4. 환급세액 조정

- 징수세액의 총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징수세액 총합계를 한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㉔차월이월환급세액에 기재
- 총합계(A99)코드의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당월조정환급세액의 합계액)을 ⑲ 당월 조정환급세액계란에 그대로 옮겨 기재한다.
- 납부세액의 ⑩ 소득세 등(가산세 포함)과 ⑪농어촌특별세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재
- ㉔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㉕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부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 오류 발생)

## 5. 소득구분 코드별 작성방법

- 근로소득 개별 항목 및 코드

간이세액(A01)	매월/반기별 급여* 총지급액 및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
중도퇴직(A02)	연도 중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
일용근로(A0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및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
연말정산(A04)	연도말까지 계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한 내역을 기재

\* 급여에는 상여,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을 포함하여 기재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기재하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기재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 개인(거주자·비거주자) 소득구분 중 2013년 신설된 퇴직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의 연금계좌(A21, A41, A48) 항목은 연금계좌(DC형, IRP, 연금저축)사업자인 금융기관만 제출하는 것으로 일반사업자는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그대로 옮겨 기재.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의 경우 가감계(A10, A20, A30, A40, A47)를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기재

## 6.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란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 7.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1)]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대상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

소득자	소득 구분	기 재 항 목
거주자 (개 인)	이자소득	신고서 부표 상 해당 코드에 기재하고 본표 A50란에 기재 * 비과세소득 : C01, C02, C03, C05, C06, C08, C09, C19, C40, C60 * 세금특례 : C11, C93 * 세금우대 : C12 * 일반세율 : C13, C18 * 일반과세 : C14 * 비실명소득 : C15 * 비영업대금이익 : C16
	배당소득	신고서 부표 상 해당 코드에 기재하고 본표 A60란에 기재 * 비과세소득 : C07, C10, C20, C23, C29, C40, C60 * 세금특례 : C11, C33, C54, C55, C56, C57, C93 * 세금우대 : C22 * 일반세율 : C58, C39 * 일반과세 : C24 * 고배당기업 : C91, C92 * 비실명소득 : C25 * 출자공동사업자 : C26
	근로소득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신고서 부표 C59란에 기재하고 본표 A01, A02, A03, A04, A10란에 기재(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해지추징 세액 등	신고서 부표 상 해당 코드에 기재하고 본표 A69란에 기재 (근로소득세로 납부) * C41, C42, C43, C44, C45, C46
내국법인	이자·배당 등	신고서 부표 상 해당 코드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 C71, C72, C73, C74, C75, C76
비거주자 (개 인)	이자소득	신고서 부표 C61란에 기재하고 본표 A50란에 기재
	배당소득	신고서 부표 C62란에 기재하고 본표 A60란에 기재
	선박 등 임대· 사업소득	신고서 부표 C63란에 기재하고 본표 A25란에 기재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부표 C64란에 기재하고 본표 A25란에 기재
	사용료소득	신고서 부표 C65란에 기재하고 본표 A25란에 기재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서 부표 C66란에 기재하고 본표 A70란에 기재
	부동산 등 양도소득	신고서 부표 C67란에 기재하고 본표 A70란에 기재
	기타소득	신고서 부표 C68란에 기재하고 본표 A40란에 기재
외국법인	근로소득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신고서 부표 C69란에 기재하고 본표 A01, A02, A03, A04, A10란에 기재(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자소득	신고서 부표 C81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배당소득	신고서 부표 C82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소득자	소득구분	기재항목
외국법인	선박 등 임대·사업소득	신고서 부표 C83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부표 C84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사용료소득	신고서 부표 C85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서 부표 C86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부동산 등 양도소득	신고서 부표 C87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기타소득	신고서 부표 C88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 9. 납부서 작성방법

### ① 소득세 영수증서(납세자용) 작성 사례

- 영수증서(납세자용) : 각 세목별로 납부서 작성하여 은행 또는 세무서에 납부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rotax.or.kr)를 통해 국세를 납부 가능

#### < 근로소득세 >

(전자)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1707	4	14	종로	011976		
상호(성명)	(주)국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111-81-11111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전화	회계연도	2017년	

귀속연도/기분	2017년 귀속 6월 분												
	납부금액												
세목명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근로소득세								4	8	0	0	0	0
농어촌특별세													
계								4	8	0	0	0	0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17년 7월 10일

년 월 일  
은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 퇴직소득세 >

(전자) 납 부 번 호					수입 징수관서	계 좌 번 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101	1707	4	21	종로	011976		
상호(성명)	(주)국세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11-81-11111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전화	회계 연도	2017년	

귀속연도/기분	2017년 귀속 6월 분												
	납 부 금 액												
세 목 명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퇴직소득세					6	6	0	0	0	0	0	0	0
농어촌특별세													
계					6	6	0	0	0	0	0	0	0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17년 7월 10일

년 월 일  
은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 기타소득세 >

(전자) 납 부 번 호					수입 징수관서	계 좌 번 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101	1707	4	16	종로	011976		
상호(성명)	(주)국세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11-81-11111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전화	회계 연도	2017년	

귀속연도/기분	2017년 귀속 6월 분												
	납 부 금 액												
세 목 명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기타소득세									1	2	0	0	0
농어촌특별세													
계									1	2	0	0	0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17년 7월 10일

년 월 일  
은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 이자소득세 >

(전자) 납 부 번 호					수입 징수관서	계 좌 번 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101	1707	4	11	종로	011976		
상호(성명)	(주)국세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11-81-11111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전화	회계 연도	2017년	

귀속연도/기분	2017년 귀속 6월 분												
	납 부 금 액												
세 목 명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이자소득세									4	0	0	0	0
농어촌특별세													
계									4	0	0	0	0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17년 7월 10일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우체국

-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 서 코드 : 관할세무서 3자리
- 납부연월 : [사례 2017.07 ⇒ 1707], 2017년 6월 귀속
- 납부구분 :

코드	납부 구분	예 시
1	확정분 자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납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 자납분
3	예정신고·중간예납	(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분
4	원천분 자납	(소득·법인)세 원천 자납분 ⇒ 원천세 자진납부 시 무조건 “4(원천분 자납)”로 기재

- 세목  
 종합소득세(10) 이자소득세(11) 배당소득세(12) 사업소득세(13) 근로소득세(14)  
 기타소득세(16) 연금소득세(17) 퇴직소득세(21) 양도소득세(22) 법인세(31) 상속세(32)  
 증여세(33) 부가가치세(41) 특별소비세(42) 주세(43) 인지세(46) 교통세(53) 농어촌  
 특별세(55), 종합부동산세(57), 과징금(76)
-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 계좌번호



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 통지서 작성 사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

구 분	인원	과세표준액	지방소득세
④ 이 자 소 득	1	400,000	40,000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11	480,000	48,000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1	12,000	1,200
⑩ 퇴 직 소 득	1	6,600,000	660,000
⑪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⑫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⑬ 소득세법제119조(양도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⑭ 가감세액(조정액)			
계	14	7,492,000	749,200

<위택스(www.wetax.go.kr) 화면>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세액미리 계산

● 세액 미리 계산하기

① 소득

\* 납부구분  1. 월  2. 반기

\* 소득지급년월 2017년 06월 소득신고년월 2017-06

② 납부세액

항목	과세표준	특별징수세액
이자소득	400,000	40,000
배당소득	0	0
사업소득	0	0
근로소득	480,000	48,000
연금소득	0	0
기타소득	12,000	1,200
퇴직소득	6,600,000	660,000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0	0
비거주자 양도소득	0	0
법인원천(내국법인)	0	0
법인원천(외국법인)	0	0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소득(구서식)	0	0

③ 가감조정내역

항목	환급액	추가납부액
당월기타환급액	0	당월추가납부액 0
연말정산환급액	0	연말정산추가납부액 0
중도퇴사자환급액	0	급여지급일 [선택]년 [선택]월 가산세면할 추가납부액 납부액 0 가산세 0
환급합계금액	0	추가납부합계금액 0
가감조정금액(차감액)	0	

④ 가감조정 결과액

과세표준 합계	7,492,000	특별징수세액 합계	749,200
가산세	0	저감후 환급잔액 (환급부족액)	0
결금 납입할 세액	749,200		

## 10.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오류 등이 확인되어 당초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②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음
  -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시점 기준으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기

- 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

①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 나.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월의 신고서와 별도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대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
- 다.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
- 라.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동 세액을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달에 함께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환급세액을 조정

<종합 사례> 당초 원천징수현황 및 수정할 내용

구 분	소득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당 초 (’17.8월분)	근로(A01)	2017년 8월	2017년 8월	10	20,000,000	400,000
	→ 8월에 새로 입사한 직원 1명에 대한 급여 2,0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30,000원)누락하였음을 10월에 확인하여 11월 10일에 수정신고					
① 수 정 (’17.8월분)	근로(A01)	2017년 8월	2017년 8월	11	22,000,000	430,000
→ 2017년 10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과 함께 제출						
② ’17.10월분	근로(A01)	2017년 10월	2017년 10월	11	23,000,000	450,000

㉠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7년 8월 귀속분으로 ’17.9.10 제출)

매월 반기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8월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8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부)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거주자·비거주자)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20,000,000	400,00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연말 정산	합	A04							
			분 납 신 청	A05							
		납 부 금 액	A06								
	가 감 계	A10	10	20,000,000	400,000			400,000			
	퇴직 소득	연 금 계 좌	A21								
		그 외	A22								
	사업 소득	가 감 계	A20								
매 월 징 수		연 말 정 산	A25								
		연 말 정 산	A26								
가 감 계	A30										
기타 소득	연 금 계 좌	A41									
	종 교 인 소 득	매 월 징 수	A43								
		연 말 정 산	A44								
		연 말 정 산	A42								
가 감 계	A40										
연금 소득	연 금 계 좌	A48									
	공 적 연 금 (매 월)	A45									
	연 말 정 산	A46									
	연 말 정 산	A47									
이 자 소 득	연 금 계 좌	A48									
	공 적 연 금 (매 월)	A45									
배 당 소 득	연 말 정 산	A46									
	연 말 정 산	A47									
저 축 해 지 추 징 세 액 등	연 금 계 좌	A48									
	공 적 연 금 (매 월)	A45									
비 거 주 자 양 도 소 득	연 말 정 산	A46									
	연 말 정 산	A47									
법 인 내 · 외 국 법 인 원 천	연 금 계 좌	A48									
	공 적 연 금 (매 월)	A45									
수 정 신 고 (세액)	연 말 정 산	A46									
	연 말 정 산	A47									
총 합	계	A99	10	20,000,000	400,000			400,000			

㉔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7년 8월분 귀속분에 대한 수정분으로 '17.11.10제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8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부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자·비거주자)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20,000,000	400,000					
			11	22,000,000	430,000						
		중 도 퇴 사 일 용 근 로	A02								
			A03								
			합	A04							
			연말 정산	A05							
	납부 금액	A06									
	가 감	계	A10	10	20,000,000	400,000			400,000		
				11	22,000,000	430,000		1,440	431,440		
	퇴직 소득	연 금 계 좌	A21								
		그 외	A22								
	가 감	계	A20								
	사업 소득	매 월 징 수	A25								
		연 말 정 산	A26								
		가 감	계	A30							
	기타 소득	연 금 계 좌	A41								
		종 교 인 매 월 징 수	A43								
		소 득 연 말 정 산	A44								
		그 외	A42								
	가 감	계	A40								
연금 소득	연 금 계 좌	A48									
	공 적 연 금 ( 매 월 )	A45									
	연 말 정 산	A46									
	가 감	계	A47								
이 자 소 득	A50										
배 당 소 득	A60										
저 축 해 지 추 징 세 액 등	A69										
비 거 주 자 양 도 소 득	A70										
법 인 내 · 외 국 법 인 원 천	A80										
수 정 신 고 (세액)	A90										
총 합	계	A99	10	20,000,000	400,000			400,000			
			11	22,000,000	430,000		1,440	431,440			

\*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1명 2,000,000원 원천징수세액 30,000원) 누락분을 포함하여 기재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1,440원)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3%(미납세액의 10% 한도)  
= 30,000원 × 3% + 30,000원 × 61일 × 3/10,000

㉔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7.10월 귀속분으로 '17.11.10 제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10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10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b>부</b>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b>부</b>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자·비거주자)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11	23,000,000	450,00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연말 정산	합 계	A04							
			분 납 신 청	A05							
			납 부 금 액	A06							
	가 감 계	A10	11	23,000,000	450,000			450,000			
	퇴직 소득	연 금 계 좌	A21								
		그 외	A22								
	가 감 계	A20									
	사업 소득	매 월 징 수	A25								
		연 말 정 산	A26								
		가 감 계	A30								
	기타 소득	연 금 계 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가 감 계	A40									
	연금 소득	연 금 계 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 말 정 산		A46									
가 감 계		A47									
이 자 소 득	A50										
배 당 소 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 원천	A80										
수 정 신 고(세액)	A90			30,000		1,440		31,440			
총 합 계	A99	11	23,000,000	480,000		1,440		481,440			

\* 수정신고(세액) A90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합계(A99)의 당초분 신고 및 수정 신고의 ⑥~⑧, ⑩~⑪란 차액을 기재

수정분 총합계	A99	10	20,000,000	400,000			400,000	
		11	22,000,000	430,000		1,440		431,440
		차 액		30,000		1,440		31,440

※ ㉔ 신고서 제출시 ㉕ 신고서도 함께 제출

## 11. 소득처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소득처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수정신고 작성대상 아님)

-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증가된 금액과 세액은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반기별 납부자도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등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가산세 대상 아님)

### <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구 분	소득금액변동 통지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 시
원천징수시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수정신고일)
귀속연월	당초 연말정산 등의 귀속연월	당초 연말정산 등의 귀속연월
지급연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연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수정신고일) 연월
원천세 신고서 상 기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상여 : A04(연말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 소득처분 인원</li> <li>- 지급액 : 소득처분 금액</li> <li>- 소득세 등 : 총급여액(해당 귀속분)에 소득처분 금액을 가산하여 재정산 시 추가납부세액</li> </ul> </li> <li>○ 인정배당 : A60(배당소득) 인원, 지급액, 소득세 등</li> <li>○ 인정기타소득 : A42(그 외) 인원, 지급액, 소득세 등</li> </ul>	

- (사례) 인정상여 소득변동통지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2015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 후 2017.6.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음
    - 통지금액 : 1억(대표자 인정상여)
    - '15년 귀속 대표자 연말정산 내역 : 총급여 1억 5천만원, 결정세액 15백만원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1억을 추가하여 재정산 시 결정세액 25백만원 계상)
  - 인정상여 처분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 내역
    - ① 신고구분 : 매월, 소득처분 “○” 표시
    - ② 귀속연월 : 2016년 2월(1월) ⇐ '15년 연말정산 신고분의 귀속연월 기재
    - ③ 지급연월 : 2017년 6월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월을 기재
    - A04(연말정산) ④ 인      윌 : 1명 ⇐ 소득처분 인원
    - ⑤ 지 급 액 : 1억 ⇐ 소득처분 받은 금액
    - ⑥ 소득세 등 : 10백만원 ⇐ 연말정산 재정산 추가납부세액
- ※ A90(수정신고)란은 기재하는 것이 아님

## 12. 사례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사례 1 : 납부세액만 있는 경우

- '17.8월분 근로소득 지급 : 20명, 총지급액 45백만원, 소득세 950,000원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5명, 총지급액 154백만원, 소득세 △300,000원
- 기타소득 지급 : 2명, 총지급액 1백만원, 소득세 200,000원

매월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8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8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전화번호	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 도 퇴 사	A02	5	154,000,000	△300,000					
		일 용 근 로	A03								
		연말 정산	합 계	A04							
			분 납 신 청	A05							
			납 부 금 액	A06							
	가 감 계	A10	25	199,000,000	650,000			650,000			
	퇴직 소득	연 금 계 좌	A21								
		그 외	A22								
		가 감 계	A20								
	사업 소득	매 월 징 수	A25								
		연 말 정 산	A26								
		가 감 계	A30								
	기타 소득	연 금 계 좌	A41								
		종교인 매월징수	A43								
		소득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2	1,000,000	200,000					
		가 감 계	A40	2	1,000,000	200,000			200,000		
	연금 소득	연 금 계 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 말 정 산		A46									
가 감 계		A47									
이 자 소 득	A50										
배 당 소 득	A60										
저축해지 추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 법인 원천	A80										
수 정 신 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27	200,000,000	850,000				850,000			

#### ②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 총 납부세액(소득세 850,000원, 지방소득세 85,000원)  
 - 근로소득세 650천원(지방소득세 65천원), 기타소득세 200천원(지방소득세 20천원)

사례 2 : △세액과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납부할세액 > △세액)

- '18.2월분 근로소득 지급 : 10명, 총지급액 12백만원, 소득세 450,000원)
- '17년 귀속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 10명, 총지급액 144백만원, 소득세 △1,000,000원
- 기타소득 지급 : 5명, 총지급액 10백만원, 소득세 2,000,000원

매월 반기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8년 2월
	수정	연말	소득 처분		③ 지급연월	2018년 2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일괄납부 여부	여, <b>부</b>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b>부</b>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12,000,000	450,000					
		중 도 퇴 사 일 용 근 로 A02								
		연 말 정 산 합 계 A04	10	144,000,000	△1,000,000					
		분 납 신 청 A05								
		납 부 금 액 A06			△1,000,000					
		가 감 계 A10	20	156,000,000	△550,000					
	퇴직소득	연 금 계 좌 A21								
		그 외 A22								
		가 감 계 A20								
	사업소득	매 월 징 수 A25								
		연 말 정 산 A26								
		가 감 계 A30								
	기타소득	연 금 계 좌 A41								
		중 고 인 매 월 징 수 A43								
		소 득 연 말 정 산 A44								
		그 외 A42	5	10,000,000	2,000,000					
	연금소득	가 감 계 A40	5	10,000,000	2,000,000			550,000	1,450,000	
		연 금 계 좌 A48								
	연금소득	공 적 연 금 (매 월) A45								
		연 말 정 산 A46								
이 자 소 득	가 감 계 A47									
	A49									
배 당 소 득	A50									
	A60									
저 축 해 지 추 징 세 액 등	A69									
	A70									
법 인 내 · 외 국 법 인 원 천 수 정 신 고 (세 액) 합 계	A80									
	A90									
총 합	A99	25	166,000,000	2,000,000			550,000	1,450,000		

②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550,000			550,000	550,000	0	

※ 총 납부세액(소득세 1,450,000원, 지방소득세 145,000원)  
 - 기타소득세 1,450천원(지방소득세 145천원), 근로소득세는 기타소득세에서 조정환급



사례 3 : △세액과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납부할세액 < △세액)

- '18.2월분 근로소득 지급 : 5명, 총지급액 20백만원, 소득세 900,000원
- '17년 귀속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 5명, 총지급액 240백만원, 소득세 △2,000,000원
- 기타소득 지급 : 2명, 총지급액 1백만원, 소득세 200,000원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8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8년 2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자·비거주자)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5	20,000,000	900,00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연 말 정 산	A04	5	240,000,000	△2,000,000				
		합 계	A05							
		분 납 신 청	A06			△2,000,000				
	퇴직 소득	가 감 계	A10	10	260,000,000	△1,100,000				
		연 금 계 좌	A21							
		그 외	A22							
		가 감 계	A20							
사업 소득	매 월 징 수	A25								
	연 말 정 산	A26								
	가 감 계	A30								
기타 소득	연 금 계 좌	A41								
	종 교 인 매 월 징 수	A43								
	그 외 연 말 정 산	A44								
	그 외	A42	2	1,000,000	200,000					
연금 소득	가 감 계	A40	2	1,000,000	200,000		200,000			
	연 금 계 좌	A48								
	공 적 연 금 (매 월)	A45								
	연 말 정 산	A46								
이 자 배 당 수 총	가 감 계	A47								
	자 소 득	A50								
	배 당 소 득	A60								
법인 수 총	저 축 해 지 추 징 세 액 등	A69								
	비 거 주 자 양 도 소 득	A70								
	법 인 내 · 외 국 법 인 원 천	A80								
	정 신 고 (세 액)	A90								
합 계	A99	12	261,000,000	200,000			200,000			

②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1,100,000			1,100,000	200,000	900,000	

※ 기타소득세 200천원은 근로소득세에서 조정환급

※ 차월이월환급세액 900,000원은 다음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과 조정환급

**사례 4 :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 12월말 법인으로 '17년 법인세 정기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상여) 1명에 1억원, 추가 정산세액 3천만원(2017년 귀속분)
- '18.3월분 근로소득 지급(20명, 총지급액 8천만원, 소득세 950,000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수정신고서 제출 대상 아님)**

**㉠ 정기분 신고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8년 3월
③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2018년 3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20	80,000,000	950,00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합 계	A04								
	연 말 분 납 신 청	A05								
	납 부 금 액	A06								
	가 감 계	A10	20	80,000,000	950,000			950,000		

**㉡ 소득처분 신고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8년 2월
③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2018년 3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합 계	A04	1	100,000,000	30,000,000					
	연 말 분 납 신 청	A05								
	납 부 금 액	A06			30,000,000					
	가 감 계	A10	1	100,000,000	30,000,000			30,000,000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별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처분의 원천징수시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날,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금액과 추가 정산세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

※ 다만,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분의 지급명세서에 소득처분금액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지급명세서를 제출

사례 5 : 연말정산분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 '18. 2월분 급여(2월 지급) 1,600만원, 원천징수세액 : 30만원
- '17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성명	소득 지급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 감 납부세액	조정환급 세액	환급 신청액
			계	종전 근무지	현 근무지			
김나연	70,000,000	1,200,000	1,400,000	-	1,400,000	△200,000	150,000	50,000
김태현	60,000,000	1,000,000	1,500,000	-	1,500,000	△500,000		500,000
정인성	30,000,000	800,000	750,000	-	750,000	50,000		
김보민	40,000,000	900,000	800,000	-	800,000	100,000		
<b>합 계</b>	<b>200,000,000</b>	<b>3,900,000</b>	<b>4,450,000</b>	<b>-</b>	<b>4,450,000</b>	<b>△550,000</b>		<b>550,000</b>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 >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8년 2월
<input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말 <input type="checkbox"/> 소득 처분 <input type="checkbox"/>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8년 2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4	16,000,000	300,00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합 계	A04	4	200,000,000	△550,000				
	연 말 산	A05							
	납 부 금 액	A06			△550,000				
	가 감 계	A10	8	216,000,000	△250,000				
총 합 계	A99	8	216,000,000						

②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⑬+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250,000				250,000	0	250,000	250,000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 원)	
소득의 종류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코드	인원	소득 지급액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 감 납부세액	④ 분납금액	⑤ 조정 환급세액	⑥ 환급 신청액	
							② 계	기납부 세액 (주, 현)	기납부 세액(종, 전)					
근로	1602	1602	A04	4	200,000,000	3,900,000	4,450,000	4,450,000		△550,000	0	300,000	250,000	
계				4	200,000,000	3,900,000	4,450,000	4,450,000		△550,000	0	300,000	250,000	

- ㉠ 소득의 종류 : 원천징수 환급할 세목의 소득을 기재
- ㉡ 귀속연월 : 신청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기재
- ㉢ 지급연월 : 신청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연월 기재
- ㉣ 코드 : 환급 신청 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를 기재
- ㉤ 인원 : 원천징수 환급할 세목의 인원을 기재(연말정산 환급의 경우 A04란 참조)
- ㉥ 소득지급액 : 환급할 세목의 소득지급액을 기재(연말정산의 경우 A04란 참조)
- ㉦ 결정세액 : 원천징수 환급할 세목의 결정세액을 기재
-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 환급할 세목의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기재
- ㉨ 차감납부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 ㉩ 조정환급세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당월조정환급세액계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내에서 납부할 세액과 상계된 환급할 세액의 합계
- ㉪ 환급신청액 : 차감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환급신청액의 합계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 □ 기납부세액명세서 (단위: 원)										
<b>①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b>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생	략					
합계				48	200,000,000	4,450,000				
<b>②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b>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특별세	종(전)근무지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생	략				
합계			4,450,000						4,450,000	
<b>③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b>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4,450,000	4,450,000	-	-	-	-					

사례 6 : 연말정산 분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분납방법

- 근로자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납을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분납 신청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 보관. 다만, 분납 신청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 퇴사(전출)하는 경우 퇴사(전출)시 분납금액 전액을 원천징수

【분납 관련 신고서 작성사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		납부			비고
	① 총 지급액	② 소득세	③ 3월10일	④ 4월10일	⑤ 5월10일	
합계	330,000,000	△200,000	△800,000	300,000	300,000	
김○○	100,000,000	600,000	200,000	200,000	200,000	분납신청O
이○○	80,000,000	△600,000	△600,000			
박○○	70,0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분납신청O
최○○	50,000,000	△300,000	△300,000			
정○○	30,000,000	△200,000	△200,000			

○ 월별 근로소득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급여 지급	인원	총 지급액	⑥ 원천징수 소득세	비고
2017년 2월	5	80,000,000	600,000	'17. 3.10. 신고
2017년 3월	5	50,000,000	500,000	'17. 4.10. 신고
2017년 4월	5	40,000,000	400,000	'17. 5.10. 신고

⇒ 3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 로 소 득	간이세액	A01	5	80,000,000	600,000	⑥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①	②					
	연 말 정 산	합계	A04	5	330,000,000	△200,000				
		분납금액	A05	2		600,000	4+5			
		납부금액	A06			△800,000	3			
	가감계	A10	10	410,000,000	△200,000	3+6				

- \* 연말정산 결과는 A04 란에 기재. '소득세 등' A04 = A05 + A06
-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A02+A03+A04), 소득세 등(A01+A02+A03+A06)
-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4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 로 소 득	간이세액	A01	5	50,000,000	5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 말 정 산	합계	A04			300,000				
		분납금액	A05							
		납부금액	A06			300,000	4			
	가감계	A10	5	50,000,000	800,000	A01(500,000)+A06(300,000)				

- \* 분납금액을 납부할 때는 A04, A06의 '소득세 등'에 분납금액을 동일하게 기재  
다만, A04의 인원, 총지급액과 A05의 인원, 소득세등은 기재하지 않음
-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A02+A03), 소득세 등(A01+A02+A03+A06)

⇒ 5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 로 소 득	간이세액	A01	5	40,000,000	4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 말 정 산	합계	A04			300,000					
		분납금액	A05								
		납부금액	A06			300,000	5				
	가감계	A10	5	40,000,000	700,000	A01(400,000) + A06(300,000)					

\* 분납금액을 납부할 때는 A04, A06의 '소득세 등'에 분납금액을 동일하게 기재  
다만, A04의 인원, 총지급액과 A05의 인원, 소득세등은 기재하지 않음.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A02+A03), 소득세 등(A01+A02+A03+A06)

사례 7 : 반기별 납부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반기 근로소득 지급 : 5명, 총지급액 30백만원, 소득세 900,000원
- 반기 중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1명, 총지급액 10백만원, 소득세 △100,000원
- 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 : 12명, 총지급액 6백만원
- 반기 기타소득 지급 : 2명, 총지급액 1백만원, 소득세 40,000원

매월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7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부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개인 (거주자·비거주자)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5	30,000,000	900,000			
		중 도 퇴 사	A02	1	10,000,000	△100,000			
		일 용 근 로	A03	12	6,000,000	0			
		연 말 정 산	A04						
		합 계	A05						
		분 납 신 청	A06						
	퇴직 소득	가 감 계	A10	18	46,000,000	800,000		800,000	
		연 금 계 좌	A21						
		그 외	A22						
	사업 소득	가 감 계	A20						
		매 월 징 수	A25						
		연 말 정 산	A26						
	기타 소득	가 감 계	A30						
		연 금 계 좌	A41						
		종 교 인 매 월 징 수 소 득	A43						
		연 말 정 산	A44						
	연금 소득	연 금 계 좌	A42	2	1,000,000	40,000			
		공 적 연 금 (매 월)	A45						
		연 말 정 산	A46						
		가 감 계	A47						
연 금 계 좌		A48							
연 말 정 산		A49							
가 감 계		A47							
법인	이 자 소 득	A50							
	배 당 소 득	A60							
	저 축 해 지 추 징 세 액 등	A69							
	비 거 주 자 양 도 소 득	A70							
	내 · 외 국 법 인 원 천	A80							
	수 정 신 고 (세액)	A90							
	총 합 계	A99	20	47,000,000	840,000			840,000	



사례 8 : 반기별 납부자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연말정산 환급할 세액 [A04(연말정산) ⑥ 소득세가 “△”인 경우] 신고 방법

-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

방 법	내 용
① 환급신청	- 1월~2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신청(3.10일까지) ※ 환급신청 가능액 = ㉗ - ㉘ ㉗ 연말정산 환급할 세액 ㉘ 1월 및 2월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 7월 10일까지 반기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3월 환급신청시 이미 신고한 1월~2월분을 제외하고 신고·납부
② 조정환급	- 7월 10일까지 반기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환급세액은 「1~6월 사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3월에 환급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

- (주)우리상사(원천세 반기별 납부)의 원천징수세액(\*'17.1월~'17.6월)

귀속 연월	지급연월	원천징수세액	환급세액	조정	납부할 세액
17. 1월	17.1월	1,500	-	-	1,500
17. 2월	17.2월	2,000	-	-	3,500
'16년 귀속 연말정산	17.2월	-	7,000	-	-3,500
17. 3월	17.3월	1,200	-	-	-2,300
17. 4월	17.4월	1,000	-	-	-1,300
17. 5월	17.5월	2,000	-	-	700
17. 6월	17.6월	2,000	-	-	2,700
합 계		9,700	7,000	-	2,700

- '17. 1월~ 2월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 3,500원
- '16년 귀속 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액 : 소득세 △7,000원\*  
\* 소득세 △7,000원 = 납부할 세액 2,500원 + 환급할 세액 9,500원

1) 연말정산 분 환급신청하는 경우

① 환급 신청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7.3.10일 제출) : 1월~2월분 포함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1월
매월	<input checked="" type="radio"/> 반기	<input type="radio"/> 수정	<input checked="" type="radio"/> 연말	소득 처분 <input checked="" type="radio"/>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2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50,000	3,50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합	A04	10	220,000	△7,000					
	연 말 정 산 분 납 신 청	A05								
	납 부 금 액	A06			△7,000					
	가 감 계	A10	20	270,000	△3,500					
총 합 계	A99	20	270,000							

②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⑬+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3,500				3,500		3,500	3,500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및 기납부세액 명세서 등을 작성해야 함

②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7.7.10일 제출) : 3월~6월분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1월*
매월	<input checked="" type="radio"/> 반기	<input type="radio"/> 수정	<input type="radio"/> 연말	소득 처분 <input type="radio"/>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6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90,000	6,20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합	A04								
	연 말 정 산 분 납 신 청	A05								
	납 부 금 액	A06								
	가 감 계	A10	10	90,000	6,200				6,200	
총 합 계	A99	10	90,000	6,200				6,200		

②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⑬+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3,500	3,500	0								

\* 3월~6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귀속연월'은 반기의 시작월을 기재(3월이 아님)

2) 연말정산 분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17.7.10일 제출) : 1월~6월분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140,000	9,70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연 말 정 산	합 계	A04	10	220,000	△7,000				
		분 납 신 청	A05							
		납 부 금 액	A06			△7,000				
	가 감 계	A10	20	360,000	2,700			2,700		
총 합 계	A99	20	360,000	2,700			2,700			

②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 급 신청액
⑫ 전 월 미환급 세 액	⑬ 기 환 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사례 9 : 연말정산 분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우리건설(주)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관련 수정신고 자료
- 직원 중 이○○는 직계존속을 배우자와 중복공제하여 추가 납부세액 200,000원 발생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7.2월 귀속분 수정 → '17.10.10제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2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8 8	22,230,000 22,230,000	1,198,170 1,198,17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연 말 산 분 납 신 청	합 계	A04	8 8	323,231,250 323,231,250	-3,901,030 -3,701,030				
		분 납 신 청	A05					18,600		
		납 부 금 액	A06			-3,901,030 -3,701,030				
	가 감 계	A10	16 16	345,461,250 345,461,250	-2,702,860 -2,502,860		18,600	-200,000	218,600	
기 타 소 득		1 1	1,000,000 1,00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수 정 신 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17 17	346,461,250 346,461,250	40,000 40,000		18,600	-160,000	218,600		

②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 급 신청액
⑫ 전 월 미환급 세 액	⑬ 기 환 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2,702,860				2,702,860	40,000	2,662,860	2,662,860
			2,502,860				2,502,860	-160,000	2,662,860	2,662,860

\* 수정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

\* 당초 신고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각 항목의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각 항목의 하단에 기재

▣ 정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7. 9월 귀속 → '17.10.10 제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9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9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간 이 세 액	A01	8	22,230,000	1,198,170					
소득	가 감 계	A10	8	22,230,000	1,198,170				1,198,170	
수 정 신 고(세액)	A90				200,000		18,600		218,600	
총 합 계	A99	2		6,000,000	1,398,170		18,600		1,416,770	

## 13. 국가기관의 원천징수 관련 유의사항

### 1) 원천세 신고·납부 주요 오류 유형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까지 금융기관 등에게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도 포함하여 신고(소득세법 §18)

####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연 제출

##### ○ 원천세 신고 담당부서와 실무부서 간의 통·수보 지연

- 업무담당 부서간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정보 전달이 지연되어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이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미납부

\*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실시

##### ○ 연말정산 결과의 원천세 신고서를 3월 10일 이후 제출

- 급여, 원천세 신고, 수납(지출), 지급명세서 업무담당자 (부서)가 다르고, 부서간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천세 신고서 제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4월 이후에 제출

####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 오류

##### ○ 신고서 상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지급액' 기재 오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지급액을 중도퇴사(A02)란이 아닌 간이세액(A01)란에 기재

⇨ 지급명세서 상 총 지급액과 원천세 신고서 상 신고금액 불일치 발생

- 2017.6월 A기관의 근로자 10명(퇴사한 홍길동 포함)에게 25,000,000원 지급하면서 사례 소득세 800,000원 원천징수함
- 직원 홍길동이 2017.6.30. 퇴사하면서 연말정산(1월-6월까지 근로소득 20,000,000원)한 결과, 소득세 400,000원 원천징수

〈잘못된 사례〉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6월	
③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6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45,000,000	1,200,00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연 말 정 산	합 계	A04							
		분 납 신청	A05							
	납 부 금액	A06								
	가 감 계	A10	10	45,000,000	1,200,000					

〈올바른 사례〉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6월	
③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6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25,000,000	800,000					
	중 도 퇴 사	A02	1	20,000,000	400,000					
	일 용 근 로	A03								
	연 말 정 산	합 계	A04							
		분 납 신청	A05							
	납 부 금액	A06								
	가 감 계	A10	11	45,000,000	1,200,000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지급액’ 과소신고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총지급액은 중도퇴사(A02)의 ‘총지급액란’에 1월 ~ 퇴사월까지의 전체 급여를 기재해야 하나, 퇴사한 달의 급여액만 기재하여 총지급액을 과소하게 신고

- 2017.6월 A기관의 근로자 10명(퇴사한 홍길동 포함)에게 25,000,000원 지급하면서 소득세 800,000원 원천징수함
- 직원 홍길동이 2017.6.30. 퇴사하면서 연말정산(1월~6월까지 근로소득 20,000,000원, 6월 급여액 3,500,000)한 결과, 소득세 400,000원 원천징수

〈잘못된 사례〉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1월		
③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6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25,000,000	800,000						
	중 도 퇴 사	A02	1	3,500,000	400,000						
	일 용 근 로	A03									
	연 말 정 산	합 계	A04								
		분 납 신 청	A05								
		납 부 금 액	A06								
	가 감 계	A10	11	28,500,000	1,200,000				1,200,000		

〈올바른 사례〉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1월		
③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6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25,000,000	800,000						
	중 도 퇴 사	A02	1	20,000,000	400,000						
	일 용 근 로	A03									
	연 말 정 산	합 계	A04								
		분 납 신 청	A05								
		납 부 금 액	A06								
	가 감 계	A10	11	45,000,000	1,200,000				1,200,000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지급액’을 중복으로 신고
  - 당초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한 후, 해당 근로자의 요청으로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시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추가로 연말정산 요청
  -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시 연말정산(A04)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분을 포함하여 제출되어 중복하여 연말정산한 결과를 초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연말정산(A04)의 총지급액(중복) 등과 제출된 지급명세서 상 총지급액 등과의 불일치 발생



사례

- 2016.12.15. 중도퇴사자 (1명 연간 총지급액 10,000,000)
- 2016.12.31. 계속근로자(10명 연간 총지급액 120,000,000)

착오 기재(중복신고)한 경우	정상적인 경우
1) 2017. 1.10. 원천세 신고서 반영 ⇨ 중도정산(A02) 1명 10,000,000	1) 2017. 1.10. 원천세 신고서 반영 ⇨ 중도정산(A02) 1명 10,000,000
2) 2017. 3.10. 원천세 신고서 반영 ⇨ 연말정산(A04) 11명 130,000,000*	2) 2017. 3.10. 원천세 신고서 반영 ⇨ 연말정산(A04) 10명 120,000,000

\* 중도퇴사 1명 지급액 10,000,000원을 중도퇴사(A02)와 연말정산(A04)에 중복 신고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 오류 제출

-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하는 경우
  - 원천세 수정신고서 제출없이 해당 월의 원천세 신고서 상 수정신고(세액)(A90)란에만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 납부
  -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이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할세무서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



- 2017.6월 A기관의 근로자 홍길동의 5월분 근로소득 3,000,000원(소득세 100,000원)을 사례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7.10. 원천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함
- 2017.6월분 A기관의 급여 지급 10명 지급액 30,000,000원(소득세1,000,000원)
- 2017.5월분 A기관의 급여 지급 9명 지급액 27,000,000원(소득세 900,000원)

**<잘못된 사례> 수정신고서 미제출하고, 해당 월에 수정신고세액 포함하여 제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7년 6월
③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17년 6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30,000,000	1,000,000				
	연말산분납신청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10	30,000,000	1,000,000				
수정신고(세액)	A90			100,000					
총합	A99	10	30,000,000	1,100,000					

〈올바른 사례〉

1) 수정신고(5월분)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5월
①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5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9	27,000,000	900,000				
		10	30,000,000	1,000,000					
	연 말 산 분	합 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 감 계	A10	9	27,000,000	900,000			900,000	
10		30,000,000	1,000,000				1,000,000		

2) 매월 신고(6월분)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6월
①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6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30,000,000	1,000,00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연 말 산 분	합 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 감 계	A10	10	30,000,000	1,000,000			1,000,000	
수 정 신 고 ( 세 액 )	A90			100,000			100,000		
총 합 계	A99	10	30,000,000	1,100,000			1,100,000		

- 원천세 신고서 상 분납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분납
  - 연말정산세액을 원천세 신고서 상 분납신청(A05) 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분납하는 경우(과소납부)
  - 분납은 연말정산 결과 10만원을 초과 시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분납이 가능하나, 원천세 신고서 상 분납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사례**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정산인원 10명, 급여총액 300,000,000원(환급액 7명 2,000,000원 추가납부액 3명 3,000,000원 납부) ⇨ 1,000,000원 납부
  - 3월 이후 분납할 세액 2,000,000원인 경우 ⇨ 1,000,000원 환급

**<잘못된 사례> 분납신청(A05)란에 기재없이 임의로 분할납부**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귀속연월	2017년 2월
④ 매월	반기	수정	⑤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③ 지급연월	2017년 2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25,000,000	800,00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합 계	A04	10	300,000,000	△1,000,000				
	연말정산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1,000,000				
	가 감 계	A10	10	28,500,000	△200,000				

\* 분납신청이 없는 경우 1,800,000원 납부해야 하나, 200,000원을 환급신청(2,000,000원 과소납부)

**<올바른 사례>**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귀속연월	2017년 2월
④ 매월	반기	수정	⑤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③ 지급연월	2017년 2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25,000,000	800,000				
	중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합 계	A04	10	300,000,000	1,000,000				
	연말정산 분납신청	A05			2,000,000				
	납부금액	A06			△1,000,000				
	가 감 계	A10	11	45,000,000	△200,000				

- 조정한급 없이 납부세액은 납부 후 환급세액 전체를 환급신청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서 상 간이세액(A01)의 소득세 등을 연말정산(A04)의 환급금액과 조정하지 않고 간이세액(A01)의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연말정산(A04)의 환급금액 전체를 환급신청
  - 원천세 신고서의 환급세액과 실제 원천징수세액 납부액과의 차이로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사례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정산인원 10명, 급여총액 300,000,000원(환급액 4,000,000원)  
 ○ 2017년 2월분 급여지급 10명 25,000,000원(소득세 1,500,000원)

〈올바른 사례〉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2월
④ 매월	반기	수정	③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2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25,000,000	1,5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10	300,000,000	△4,00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4,000,000				
	가감계	A10	20	325,000,000	△2,500,000					

② 환급세액 조정(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⑮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⑰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⑱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⑳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 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선택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합병 등)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잘못된 사례) 간이세액(A01) 1,500,000원 납부하고,

연말정산 환급분(A04) 4,000,000원을 환급신청

(올바른 사례) 간이세액(A01)과 연말정산 환급분(A04)을 조정한 금액 2,500,000원을 환급신청

- 원천징수세액만 납부하고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부서별로 원천징수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담당자간에 엑셀파일로 납부내역을 통·수보한 후 회계과 직원이 총괄하여 신고
    - ▷ 원천세 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신고금액·납부금액 불일치가 다수 발생하여 불일치 사유 검토에 행정력 낭비 초래
    - ▷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상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원천세 신고대상이 아닌 비과세금액을 총지급액에 포함
  - 정액급식비 중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원천세 신고서 상 총지급액 기재대상이 아니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님에도 원천세 신고서 총지급액란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
    - ▷ 원천세 신고서 상 총지급액과 지급명세서 상 총지급액의 차이 발생
    - ▷ 원천세 신고서 상 간이세액(A01)의 총지급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

## 2)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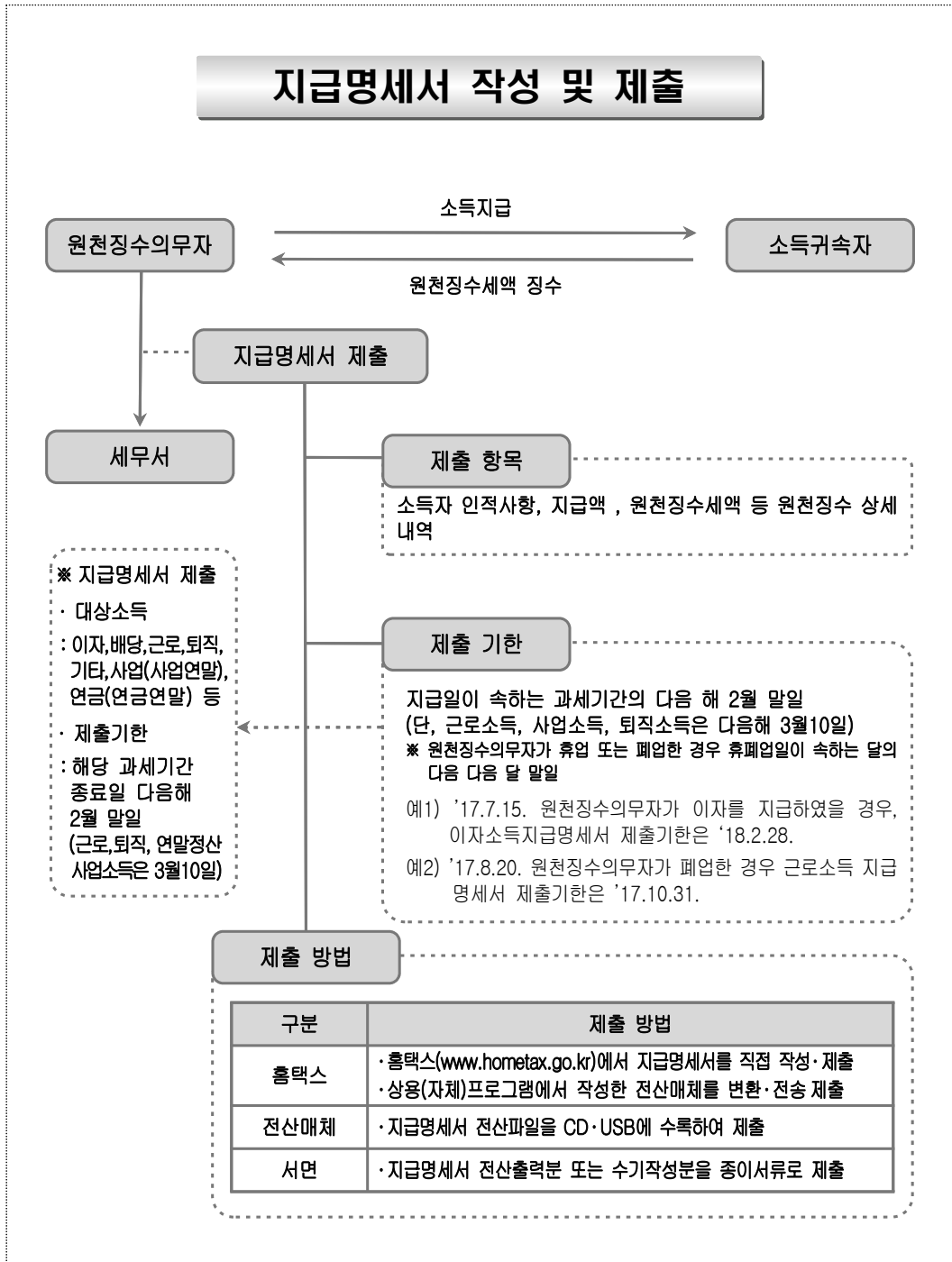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사업·근로·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164)

### 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미제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업무 기피에 따른 소관부서 수시변경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근로장려금 지급, 공적보험료 책정, 금융기관 대출심사 등에 활용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수동으로 관리하면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 연말정산 담당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여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누락
- ②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 퇴직급여 프로그램 미비로 근로기간이 20년(10년) 미만인 직원과 12월에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 인사이동시 업무 인계·인수 소홀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 14. 주요 지급명세서 작성사례



**※ 지급명세서 제출**

- 대상소득 : 이자, 배당, 근로, 퇴직, 기타, 사업(사업연말), 연금(연금연말) 등
- 제출기한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해 2월 말일 (근로, 퇴직,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3월10일)

1)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비영업대금 이익)

사례 1) '17.1.1. 법인이 대표이사인 나국세에게 빌린 2억원에 대한 이자 1천만원을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b>(주)국세</b>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b>나국세</b>	③ 사업자등록번호 <b>123-81-12345</b>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b>00000-0000000</b>	⑤ 소재지 또는 주소 <b>서울 종로 종로5가 1번지</b>		
소득자	⑥ 성명(상호) <b>나국세</b>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b>*****-*****</b>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b>111</b>
	⑨ 주 소 <b>서울 종로 종로3가 1번지</b>		⑩ 거주구분 거주구분 [○] 거주자 [ ]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거주지국 -
			⑪-1 거주지국 코드 -	⑫ 계좌번호(발행번호) -
				⑬ 신탁이인 여부 [ ] 여 [○] 부

지급명세													원천징수세액						
⑭ 지급일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종류	⑱ 조세특례등	⑲ 금융상품코드	⑳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번호)	㉑ 채권이자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등	㉔ 지급액(소득금액)	㉕ 세율(%)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7	1	1	1	1	T	22	NN	-	-	-	160101 161231	0.05	10,000,000	25	2,500,000	-	250,000	-	2,750,000

\* 소득의 종류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 금융상품코드란 공란  
 \* 금융상품코드를 적용하지 않는 소득은 금융상품코드란에 반드시 공란으로 기재

사례 2) '17.7.1. 법인이 대표이사인 나국세에게 대여한 2억원에 대한 이자 2천만원을 수령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b>나국세</b>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b>*****-*****</b>	⑤ 소재지 또는 주소 <b>서울 종로 종로3가 1번지</b>		
소득자	⑥ 성명(상호) <b>(주)국세</b>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b>123-81-12345</b>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b>211</b>
	⑨ 주 소 <b>서울 종로 종로5가 1번지</b>		⑩ 거주구분 거주구분 [○] 거주자 [ ]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거주지국 -
				⑪-1 거주지국 코드 -
				⑫ 계좌번호(발행번호) -
				⑬ 신탁이인 여부 [ ] 여 [○] 부

지급명세													원천징수세액						
⑭ 지급일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종류	⑱ 조세특례등	⑲ 금융상품코드	⑳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번호)	㉑ 채권이자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등	㉔ 지급액(소득금액)	㉕ 세율(%)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7	7	1	7	1	C	22	NN	-	-	-	160701 170630	0.10	20,000,000	25	-	5,000,000	500,000	-	5,500,000

\* 원천징수대상 법인의 과세구분은 "C"를 기재



## 2)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사례 1) '17.3.1. 비상장법인인 (주)국세가 대주주 나국세에게 배당금 2천만원을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b>(주)국세</b>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b>나국세</b>	③ 사업자등록번호 <b>123-81-12345</b>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b>00000-0000000</b>	⑤ 소재지 또는 주소 <b>서울 종로 종로5가 1번지</b>		
소득자	⑥ 성명(상호) <b>나국세</b>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b>*****-*****</b>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b>111</b>
	⑨ 주 소 <b>서울 종로 종로3가 1번지</b>		⑩ 거주구분 거주구분 [○] 거주자 [ ]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거주지국 -
			⑪-1 거주지국 코드 -	⑫ 계좌번호(발행번호) -
				⑬ 신탁이의 여부 [ ] [○] 여 부

#### 지급명세

연	월	일	과세구분	소득의 종류	조세특례 등	금융상품 코드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번호)	채권이자구분	지급대상기간	이자율 등	지급액(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2017	3	1	3	1	G	51	NN	A52	123-81-12345	-	-	-	20,000,000	14	2,800,000		280,000			3,080,000

\* 일반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소득 지급 시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 일반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사례 2) '17.7.1. 비상장법인인 (주)국세가 소액주주 노국세에게 배당금 1천만원을 지급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b>(주)국세</b>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b>나국세</b>	③ 사업자등록번호 <b>123-81-12345</b>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b>00000-0000000</b>	⑤ 소재지 또는 주소 <b>서울 종로 종로4가 1번지</b>		
소득자	⑥ 성명(상호) <b>노국세</b>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b>#####-#####</b>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b>111</b>
	⑨ 주 소 <b>서울 종로 종로4가 1번지</b>		⑩ 거주구분 거주구분 [○] 거주자 [ ]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거주지국 -
			⑪-1 거주지국 코드 -	⑫ 계좌번호(발행번호) -
				⑬ 신탁이의 여부 [ ] [○] 여 부

#### 지급명세

연	월	일	과세구분	소득의 종류	조세특례 등	금융상품 코드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번호)	채권이자구분	지급대상기간	이자율 등	지급액(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2017	7	1	7	1	G	51	NN	B52	123-81-12345	-	-	-	10,000,000	14	1,400,000		140,000			1,540,000

\* 일반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소득 지급 시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 일반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17.4.10. (주)국세가 마케팅 전문 학원강사 김홍보에게 강연료 2,000,000원 지급한 경우

\*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사업소득 중 '매월징수(A25)' 란에 기재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3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관리 번호		
2017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b>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b>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⑦ 세액 집계현황					
(주)국세	123-81-12345	서울 종로 종로5가	1	1	2,000,000	⑧ 소득세	⑨ 지방소득세	⑩ 계			
						60,000	6,000	66,000			
<b>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b>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코드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외 국인 (1·9)	⑮ 지급 년도	⑯ 지급 건수	⑰ (연간) 지급총액	⑱ 세율	⑳ 소득세	㉑ 지방 소득세	㉒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1	2,000,000	3%	60,000	6,000	66,000	
	소득 부징수 연간 합계										
1	940903	김홍보	000000-0000000	1	2017	1	2,000,000	3%	60,000	6,000	66,000

####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 건별 소득 부징수되는 건수·금액은 "소득 부징수 연간합계"란에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연간 총지급액 계"와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득 부징수 포함) 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 ④ 연간 소득인원란은 ⑫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은 ⑯지급건수(소득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각각 적으며,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 ⑪ 업종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 ⑭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적습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꽂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17.1.10. (주)국세가 이세빛에게 사례금 1,000,000원 지급한 경우
- '17.5.20., 11.20 (주)국세가 한금연에게 원고료 총 1,000,000원 지급한 경우
- '17.1.25., 7.25., 11.25. (주)국세가 교수 박지일에게 강연료 총 3,000,000원 지급한 경우

\*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기타소득 중 '그 외(A42)' 란에 기재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5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2017년	<b>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b>						관리 번호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b>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b>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 급건 수	⑥ 연 간 총지 급액 계	⑦ 연 간 소득 금액 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⑩지방 소득세	⑪농어촌 특별세	⑫계				
(주)국세	123-81-12345	서울 종로 종로5가	3	8	5,000,000	1,800,000	360,000	36,000	-	396,000				
<b>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b>														
일련 번호	⑬ 소득 구분코드	⑭ 소득자 성명(상호)	⑮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⑯ 내· 외국인	⑰ 지급 연도	⑱ 지급 건수	⑲ (연간) 지급총액	⑳ 필요 경비	㉑ 소득 금액	㉒ 세율	㉓ 소득세	㉔ 지방 소득세	㉕ 농어촌 특별세	㉖ 계
1	60	이세빛	XXXXXXXX- XXXXXXXX	내국인	2017	1	1,000,000	-	1,000,000	20%	200,000	20,000	-	220,000
2	75	한금연	XXXXXXXX- XXXXXXXX	내국인	2017	2	1,000,000	800,000	200,000	20%	40,000	4,000	-	44,000
3	76	박지일	XXXXXXXX- XXXXXXXX	내국인	2017	3	3,000,000	2,400,000	600,000	20%	120,000	12,000	-	132,000

#### 작성 방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⑬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㉓란부터 ㉖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 간 총지급액계와 ⑦ 소득자별 연간소득금액(소액 부정수를 포함합니다)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⑭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⑱ 지급건수(소액 부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 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⑯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⑲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㉑ 소득금액란은 ⑲ (연간)지급총액에서 ㉒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⑬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15. 원천세 신고·납부 Q&A

### <원천세 신고·납부 개요>

#### 1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신고·납부하는가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에 수동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금융기관에 자진납부합니다.

#### 2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은 소득세 등을 어디에서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까? 언제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신고·납부하는가요?

-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합니다.
- 이 경우에도 법인이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할 수 있습니다.

#### 3 원천세 신고서 상 귀속연월란과 지급연월란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을 기재하고,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을 기재하며, 소득처분의 경우 대상 소득에 대한 당초 귀속연월을 기재합니다.
- 지급연월란은 소득을 지급한 연월을 기재하고,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을 기재하며, 소득처분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수정신고일) 연월을 기재합니다.

**4** 회사의 임금체불로 근로자에게 '17년 10월~12월 급여를 연말정산 할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시기특례 규정에 따라 1월~11월분 급여를 12월말 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1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또한, 12월분 급여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17년 10월분 ⇨ '18년 1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10월
④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12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15,000,000	500,000					

**2) '17년 11월분 ⇨ '18년 1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11월
④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7년 12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15,000,000	500,000					

**3) '17년 12월분 ⇨ '18년 3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연말정산)**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7년 12월
④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8년 2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15,000,000	500,000					
연 말 정 산	연 말 정 산	A04	10	180,000,000	△2,000,000					

## < 반기별납부자 >

**5** 올해 상반기 신규사업자입니다. 반기별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2015년 2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신규사업자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별납부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 올해 하반기(7월~12월)부터 반기별납부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6월말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반기별 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란에 어떤 내용을 기재합니까?

- 인원
  - 근로소득의 간이세액(A01)란은 반기의 마지막 월의 인원, 중도퇴사(A02)란은 반기 중 퇴사자의 총 인원, 일용근로(A03)란은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연말정산(A04)란은 계속근로자로서 연말정산한 인원을 기재
  - 사업소득(A25)·기타소득(A40)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기재
  - 퇴직소득(A20)·이자소득(A50)·배당소득(A60)·법인원천(A80)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대부분 6개월 월별 합계인원)을 기재
- 총지급액
  -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의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은 제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
- 소득세 등
  -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기재(지방소득세는 제외)
- 농어촌특별세
  -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를 기재
- 가산세
  - 법정 신고·납부일이 지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재

**7** 반기별납부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언제하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는 다음연도 상반기 신고기일인 7월10일에 하는 것이며,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연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이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로 월별납부자와 동일합니다.
-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반기별 신고기일인 7월 10일에 원천세 신고시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1월과 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7월 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 분과 기 신고한 분(1월~2월)을 제외합니다.

**8** 반기별납부자가 월별 납부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납부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반기별납부를 포기하는 경우 당해 반기의 첫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원천세 신고서(귀속연월 : 반기 첫째월, 지급 연월 : 포기신청서 제출월)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9** 반기별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 하나요?

- 반기별납부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1장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 근로소득 >

10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매월 원천징수되어 신고·납부된 세액 범위 안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11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세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교사의 급여와 함께 원천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2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작성시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다만, 실비변상적 급여(식대 월 10만원 이하, 여비, 일·숙직비 등) 등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비과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상 지급액에 제외합니다.

13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신고방법은?

- 근로자에게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4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하는가요?

-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과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처분이 있는 때[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경정 등),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신고), 수정신고일(수정신고)]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으로 인한 증가액만 별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 귀속연월(당초 연말정산 귀속연월), 지급연월(소득처분이 있는 연월)
- 다만, 지급명세서는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에 소득처분된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15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분납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분납기간(3월10일~5월10일)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신고기한인 7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6

근로자는 분납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

- 2월부터 4월까지(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신고 기준으로 3월10일~5월10일)

17

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까?

-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의 분납 신청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원천징수하고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보관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금액을 정확하게 구분 표기(분납신청 A05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분납자 명세서 작성 예시 >**

(단위 : 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2월	3월	4월
갑	*****-*****	450,000	150,000	150,000	150,000
을	*****-*****	3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	20,000	20,000	20,000
병	*****-*****	150,000	50,000	50,000	50,000

\* 상단 : 소득세, 하단 : 농특세

**18**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19**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20**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하나요?

- 농특세를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특세법』 제9조)

**21** 지방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므로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분납금액을 잘못 기재하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분납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

23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금(영업권) 1억원을 지급하고,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법인이 기존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임차인은 영업권 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교부하였더라도,
    - 법인은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 (신고서 기재) 기타소득 ‘그 외(A42)’란에 기재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기 타 소 득	연 금 계 좌	A41							
		중교인	A43							
		매월징수	A44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1	100,000,000	4,000,000				
가 감 계	A40	1	100,000,000	4,000,000			4,000,00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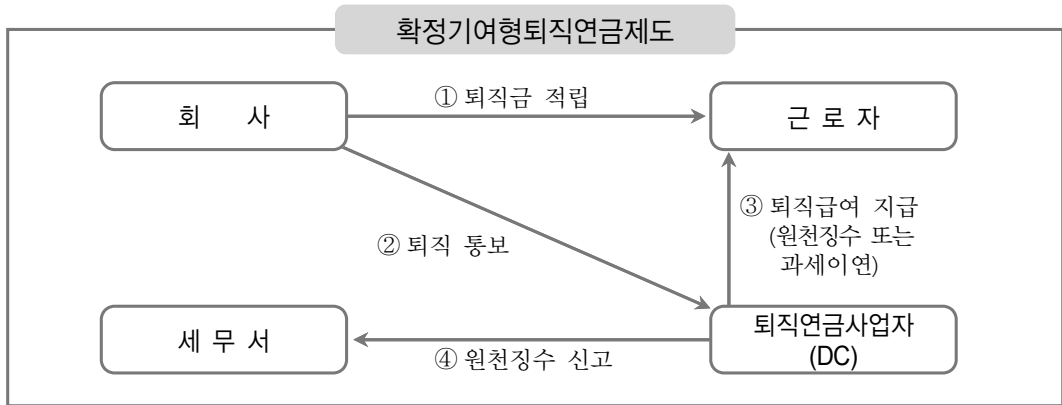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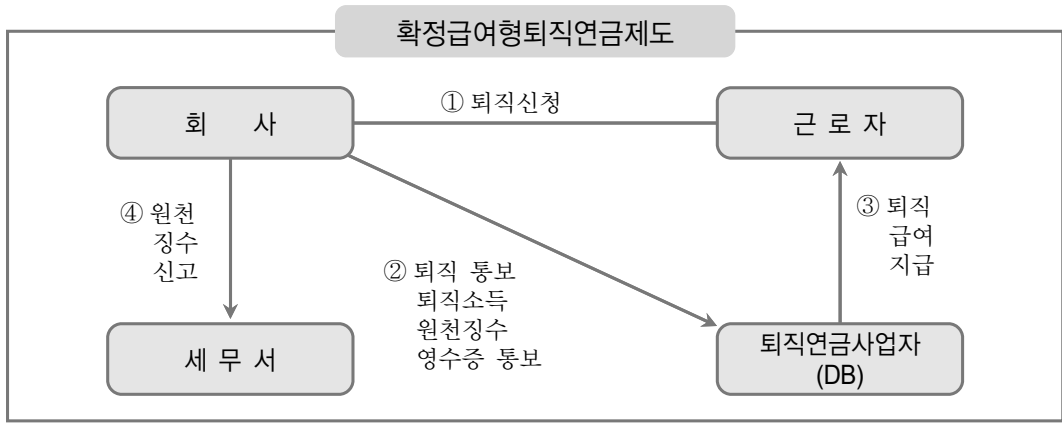
거주자에게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25만원(기타소득금액 5만원)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최저한(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소법 §①15)과 일시적 인적용역(소법 §①19)의 기타 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고서 기재) 기타소득 ‘그 외(A42)’란에 기재

### < 퇴직소득 >

25 회사가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회사(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퇴직연금 : 퇴직연금사업자(단,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 등은 회사가 원천징수)



26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받는 퇴직금·퇴직위로금은 원천세 신고서 상 어디에 기재합니까?

- 원천세 신고서 상 '퇴직소득 그 외(A22)'에 기재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은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퇴직소득 그 외(A22)'에 기재합니다.
- 퇴직소득의 '연금계좌(A21)'와 '그 외(A22)'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연금사업자(A21)인지 회사(A22)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27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연금 일시금 1억원(퇴직소득세 5백만원)을 전액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할 때 원천징수의무와 원천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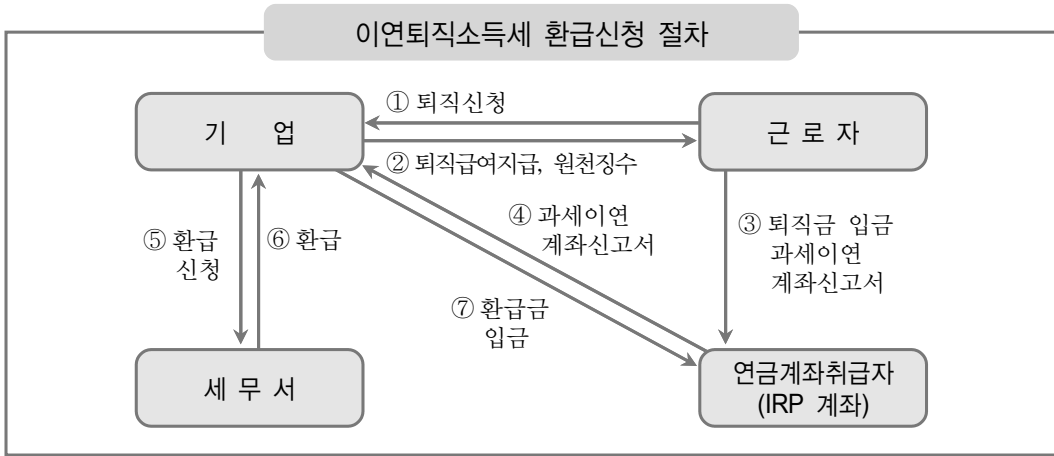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되,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과세이연계좌)으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입금된 퇴직급여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퇴 직 소 득	연 금 계 좌	A21							
		그 외	A22	1	100,000,000	0				
		가 감 계	A20	1	100,000,000	0			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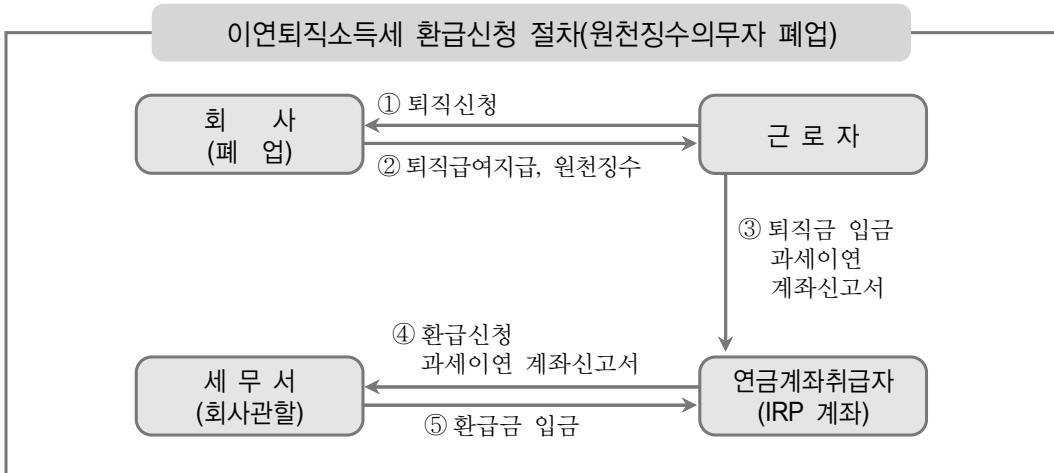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누가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DC, IRP)로 입금하여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 시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퇴직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연금계좌취급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거주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 2017.1.1. 퇴직한 홍길동이 퇴직금 1천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100,000원, 사례 지방소득세 10,000원을 납부하고 2017.1.31. 남은 퇴직금 전액(9,890,000)원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① 퇴직자 인적사항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② 과세이연계좌 신고사항

(1) 과세이연계좌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명	**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계좌번호(예금주)	***** (홍길동)		

(2) 입금내역

일 자		금 액	
① 퇴사일	2017.1.1.	④ 세후 퇴직급여액	9,890,000
② 과세이연계좌 입금일	2017.1.31.	⑤ 입금액	9,890,000
③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경과일수	30	⑥ 입금비율(⑤÷④×100)	100%

상기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과세이연 계좌를 신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3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4쪽)를 작성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A69)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무자는 부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7쪽)를 작성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 상 ②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회사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조정환급하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환급신청 시 ‘기납부세액 명세서(8쪽)’와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9쪽)도 작성해야 합니다.

**32**

A법인이 B법인에 '17.7.1. 흡수합병(분할, 사업양도,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과세사업자로 전환 등)되는 경우 A법인의 차월이월 환급세액(1백만원)을 환급신청하지 않고 B법인에 이월할 수 있습니까?

-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으로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 등이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10쪽)을 작성하여 원천세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10쪽 중 제10쪽)

사업자등록번호(B법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원)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000-00-00000	A법인	'17.7.1	1	'17년 6월	'17년 6월	1,000,000	

\* 승계근거 : 합병(1), 사업자단위과세 전환(2), 그 밖의 원인(3)



# 제 3 장

##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요령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 홈택스 세금신고 및 신고분납부

#### 1) 세금신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https://hometax.go.kr>)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음

신고방법에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작성방식]과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을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검증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변환방식]이 있음

#### ○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접수일정

- ① 정기분 신고납부 : 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② 수정, 기한 후 전자신고 : 지급월의 다음월 25일부터 신고가능  
- 환급신청은 할 수 없음
- ③ 이용시간 : 신고기간 중 06 : 00 ~ 24 : 00(휴일, 공휴일 포함)

#### ○ 원천징수 세금신고 유의사항

- ① 동일 귀속, 지급연월의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번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에 한하여 신고서로 인정함  
- 정기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수정 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서는 월말 까지 최종으로 전송한 자료만을 신고서로 인정
- ②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는 홈택스 첫화면 상단의 [홈택스도우미-자료실]에서 검색하여 내려 받을 수 있음
- ③ 휴·폐업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방식]으로 신고 할 수 있음

## 2) 신고분납부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홈택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결제원의 지로시스템에 연결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거나, 세목별로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전자신고분 납부의 경우 세금신고한 세액을 자동조회하여 납부

- 전자납부 이용시간 : 365일(07 : 00 ~ 22 : 00)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원천세, 법인세)의 전자신고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은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에 신고·납부  
단,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ctax.seoul.go.kr](http://c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

## 2. 원천세 홈택스 신고 이용안내

### <주요 메뉴>

- 신고([작성방식]과 [변환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 직접 작성·전송방식으로 신고 [작성방식]
  - ①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 ②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를 클릭 → ③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정기, 수정, 기한후) 클릭 → ④ 신고서 입력 → ⑤ 오류검증 → ⑥ 전송 → ⑦ 접수증 확인 → ⑧ 신고서 출력
- 회계프로그램 생성파일 변환·전송방식으로 신고 [변환방식]
  - ①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 ②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를 클릭 → ③ 파일변환 신고(회계 프로그램)를 클릭 → ④ 변환파일 선택 → ⑤ 오류검증 및 변환 → ⑥ 전송 → ⑦ 접수증 확인
- 신고내역 확인 :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한 내역을 확인

(1) 작성방식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에 의해 직접 작성하여 전송)

1) [신고/납부]메뉴를 선택하고 [세금신고]에서 [원천세]를 클릭



2) 신고유형(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을 선택



3)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징수의무자의 기본정보, 신고구분,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기본정보 입력' (Basic Information Input) screen. It contains several sections with red boxes and numbers indicating key input points:

- 1**: Points to the '귀속연월' (Year of Attribution) dropdown menu, currently set to 2016년 06월.
- 2**: Points to the '연말정산' (Year-end Settlement) checkbox, which is checked.
- 3**: Points to the '소득처분' (Income Disposition) radio button, which is selected.
- 4**: Points to the '환급신청' (Refund Application) checkbox, which is checked.
- 5**: Points to the '소득종류선택' (Income Type Selection) section, where multiple checkboxes are checked.
- 6**: Points to the '수정신고(세액)' (Amended Report (Tax)) checkbox, which is circled.

At the bottom of the form, there is a button labeled '저장 후 다음이동' (Save and Move to Next).

- ① 귀속연월 : 신고서에 해당하는 귀속년월을 작성하며 귀속연월은 5년 전까지 선택 가능(사업자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전에만 수정 가능)
- ② 연말정산포함 : 연말정산 소득(A04,A05,A06,A26,A46) 입력시 체크
- ③ 소득처분신고 : 소득처분 신고시 체크
- ④ 환급신고 : 환급액을 차월로 이월하지 않고, 당월에 환급받을 경우 체크
- ⑤ 소득종류선택 : 해당 귀속·지급월에 동시에 지급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전부 체크
- ⑥ 수정신고(세액) : 수정신고 직후에 신고하는 정기신고면 체크하여 수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환급 세액을 차가감하여 징수세액 란에 입력

- 4) 인원, 총지급액 및 징수세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수정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⑧가산세란에 입력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원천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01. 기본정보 입력 (주)국세 | 100-84-00004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0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03. 신고서부표

04. 환급신청서부표

05. 신고서제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아래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이면 환급세액 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근로소득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간이세액	A01	10	35,000,000	1,000,000			
중도퇴사	A02	1	24,573,000	-52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합계	A10	11	59,573,000	480,000			

> 퇴직소득 (단위: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1	138,000,000	6,600,000			
가합계	A20	1	138,000,000	6,600,000			

> 기타소득 (단위: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연금계좌	A41						
그 외	A42	1	300,000	12,000			
가합계	A40	1	300,000	12,000			

> 이자소득 (단위: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이자소득	A50	1	1,600,000	400,000			

> 총 합계 (단위: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총합계	A99	14	193,473,000	7,432,000			

환급세액 조정

>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12)전월미환급세액	(13)기환급 신청세액	(14)차감잔액(12-13)
0 원	0 원	0 원

> 당월 발생 환급 세액 **차질이필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

(15)일반환급	(16)신탁재산(금융회사 등)	(17)그 밖의 환급세액
0 원	0 원	금융회사 등 : 0 원 합 방 등 : 0 원

※ 합방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질이필 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하려면, '차질이필 승계명세서 작성' 버튼을 누르세요.

환급조정 및 신청세액

(18)조정대상환급세액(14+15+16+17)	(19)당월 조정환급 세액 합계	(20)차질이필 환급세액(18-19)
0 원	0 원	0 원

※ 환급신청하려면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환급신청구분'에 체크 후 환급신청서부표를 작성합니다.

(21)환급신청액 0 원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징수세액이 “△금액” 발생한 경우의 조정환급

- 동일소득 내에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같이 존재할 경우는 자동적으로 납부세액이 조정환급처리 됨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아래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이면 환급세액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 근로소득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간이세액	A01	5	5,000,000	5,000			
중도회사	A02	1	10,000,000	-1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	A04						
연말정...	A05						
연말정...	A06						
가합계	A10	6	15,000,000	-5,000			

> 이자소득 (단위:원)

- 타 소득에 조정환급을 해야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9)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입력  
(단, 가감계에 환급세액이 존재하여야 해당 환급금액만큼 타 소득에 조정환급을 할 수 있으며, 「(9)당월조정 환급세액」란은 양수금액으로 입력하여야 정상적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됨)

가합계	A10	6	15,000,000	-5,000			
-----	-----	---	------------	--------	--	--	--

> 이자소득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이자소득	A50	1	1,500,000	1,000			1,000

※ 징수세액이 “△금액” 발생한 경우의 환급신청

- 기본정보 입력 시 환급신청 여부에 체크했을 경우 「(21)환급신청액」을 반드시 작성 (「(20)차월이월 환급세액」 내의 금액만 환급신청 가능)

● 환급세액 조정

>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12)전월미환급세액	(13)기환급 신청세액	(14)차감잔액(12-13)
6,000 원	1,000 원	5,000 원

> 당월 발생 환급 세액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

(15)일반환급	(16)신택재산(금융회사 등)	(17)그 밖의 환급세액
5,000 원	0 원	금융회사 등 : 0 원 합 병 등 : 0 원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하려면, '차월이월 승계명세서 작성' 버튼을 누르세요.

● 환급조정 및 신청세액

(18)조정대상환급세액(14+15+16+17)	(19)당월 조정환급 세액 합계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
10,000 원	1,000 원	9,000 원

※ 환급신청하려면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환급신청구분"에 체크 후 환급신청서부표를 작성합니다.

(21)환급신청액	9,000 원
<input type="checkbox"/>	9,000 원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전월에 이월시킨 환급세액이 존재할 경우 「(12)전월미환급세액」에 전월 신고서의 「②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입력해야 하며
- 「(13)기환급신청세액」에는 전월 신고서에 입력했던 「①환급신청액」을 입력

<전월 신고서>

①환급신청액 (10+①+②+③+④)	②차월이월 환급세액 (⑤-⑥)	③합계액
6,000	6,000	1,000

>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12)전월미환급세액	(13)기환급 신청세액	(14)차감잔액(12-13)
6,000 원	1,000 원	5,000 원

5) 신고서부표 화면에서 거주자·비거주자 이자, 배당소득 등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6) 해당 신고서부표 상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놓여준 특별세	가산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놓여준 특별세	가산세
이자소득	C15					
배당소득	C25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놓여준 특별세	가산세
비영업대금이익(25%)	C16	1	1,600,000	400,000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배당소득 계	C30	1	1,600,000	400,000		



7)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서 부표’ 입력

○ 「(21)환급신청액」과 환급신청서 부표의 「⑥환급신청액」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입력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환급신청 내역 입력

(21) 환급신청액 9,000 원

※ 위의 환급신청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의 (21)환급신청액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1) 소득의 종류	(2) 귀속연월	(3) 지급연월	(4) 코드	(5) 인원	(6) 소득 지급액	(7) 결정세액	②계
근로소득	2016-05	2016-05	A02	1	1,000,000	50,000	
근로소득	2016-06	2016-06	A02	1	1,000,000	60,000	
합 계				2	2,000,000	110,000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②계	(8) 기납부세액 [주(현)]	(9) 기납부세액 [중(전)]	(10) 차감세액	(11) 분납금액	(12) 조정환급세액	⑥ 환급신청액
56,000	56,000		-6,000			6,000
63,000	63,000		-9,000		6,000	3,000
125,000	125,000	0	-15,000	0	6,000	9,000

- ① 소득의 종류 : 환급금액이 산출된 소득의 종류를 선택
- ② 귀속연월 : 환급세액이 발생한 신고서의 귀속연월을 입력
- ③ 지급연월 : 환급세액이 발생한 신고서의 지급연월을 입력
- ④ 코드 : 환급금액이 산출된 소득코드를 선택
- ⑤ 인원 : 환급대상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입력
- ⑥ 소득 지급액 : 환급대상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총지급액을 입력
- ⑦ 결정세액 :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결정세액 합계액을 입력
- ⑧ 기납부세액[주(현)] :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주(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
- ⑨ 기납부세액[중(전)] :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중(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
- ⑩ 차감세액 :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합계액을 입력
- ⑪ 분납금액 : 신고서 본표의 A05(분납신청)의 징수세액 ⑥소득세 등 금액을 입력
- ⑫ 조정환급세액 : 신고서 본표의 환급대상세액에서 자동적으로 차가감되는 동일 세목의 납부금액과 타 세목에 입력된 (9)당월조정환급세액을 합하여 입력

- ‘환급신청서 부표’ 화면 상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클릭하고, 만약 전월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별도로 작성

원천징수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01. 기본정보 입력  
0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03. 신고서부표  
04. 환급신청서부표  
05. 신고서제출

(주)국세 | 100-95-00004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환급신청 내역 입력

(21)환급신청액 26,000 원

※ 위의 환급신청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21)환급신청액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소득의종류	귀속년월	지급년월	코드	인원	소득 지급액	④결정세액	⑤가
근로소득	2015-03	2015-03	A02	1	24,573,000	480,000	1.
합계				1	24,573,000	480,000	1.

※ 기납부세액 [주(원), 중(건)]이 있는 경우 하단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2)전월 미환급세액 0 원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 26,000 원

※ 위의 (12)전월 미환급세액 및 (20)차월이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 (12)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하단의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

○ 환급계좌신고  
은행 국민은행  
계좌번호 123456789 ※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대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제환급금 계좌는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2천만원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8) 기납부세액 명세서 입력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는 환급신청 대상 소득항목에 대한 신고서의 명세 작성(환급분은 제외하며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만 명세 작성)
  - 연말정산 환급신청의 경우 매월 간이세액(A01)의 인원, 지급액, 소득세 등 기재
-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소득의 지급명세서에 입력된 각 원천징수 대상자의 주(현) 근무지에서의 기납부세액을 입력
-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기록된 기납부세액과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기록된 기납부세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하여 작성
- 기납부세액의 금액이 일치할 경우는 [입력완료]버튼을 클릭하여 진행

원천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주)국세 | 100-85-00004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01. 기본정보 입력

0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03. 신고서부표

**04. 환급신청서부표**

05. 신고서제출

● 기납부세액 명세서 다음달

- 환급 신청시 기납부세액 [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소득구분	귀속년월	지급년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액		
						①소득세 등	②동여특별	
근로소득	2015-01	2015-01	A01	1	10,000,000	400,000		
근로소득	2015-02	2015-02	A01	1	10,000,000	400,000		
근로소득	2015-03	2015-03	A01	1	4,573,000	200,000		
<b>합 계</b>					3	24,573,000	1,000,000	

※ 환급신청 대상 소득 및 세목코드(A01, A20 등)의 기납부한 세액을 귀속년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단, 납부한 코드만)  
(예) A01:납부, A02:환급 인 경우 A01만 입력

●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소득구분	성명	소득자		주(현)근무지		
		주민등록번호	확인	(3)소득세 등	(4)동여특별세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노**	*****	확인	1,000,000	0	
<b>합 계</b>				1,000,000	0	

※ 지급명세서 현황을 인별로 전산관리하고 있는 경우, 한 근로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집계역만 작성하여 한건만 제출가능합니다.  
※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기능은 100건이상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환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동여특별세		
①소득세 등 합계	②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①-②)	③동여특별세 합계	④동여특별세 합계	차이금액(③-④)
1,000,000 원	1,000,00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사유선택**  중도회사자 지급명세서 포함  전입자  전출자  합병분할  기타

※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며,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여 아래 사유내용을 최대 한글 750자(1500bytes)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사유내용**  12/1500 bytes

※ 특수문자 %\*#@ 등 입력불가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 납부현황의 ①소득세 등의 합계와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③주(현)근무지 소득세 등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전 입력완료

9)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

-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 란에는 전월미환급세액이 최초로 발생했을 때의 신고서 명세를 작성
- [환급세액 조정 현황]란에는 최초로 발생한 전월미환급세액의 이용 명세를 작성(첫번째 행은 기본적으로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란의 집계 정보가 자동 입력됨)

제 3장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제출 요령

※ 상단의 (12)전월미환급세액 내역의 금액과 [환급세액 조정 현황]의 ⑩차월이월환급세액의 금액은 같아야 함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도움말

- 환급 신청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의 (12)전월미환급세액에 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

(12)전월 미환급세액  원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귀속년월	지급년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발생 환급세액	②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	③당월발생 환급세액(①-②)
2016-05	2016-05	매월	근로소득	6,000		6,000
합 계						6,000

**환급세액 조정 현황**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귀속년월	지급년월	전월미환급세액			④당월발생 환급세액	⑤조정대상 환급세액
		⑥전월미환급세액	⑦기환급세액	⑧차감잔액		
2016-05	2016-05				6,000	

※ 현재 작성중인 신고서의 (12)전월미환급세액과 마지막 행의 ⑤차월이월환급세액은 같아야 합니다.

취소 입력완료

**환급세액 조정 현황**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전월미환급세액			④당월발생 환급세액	⑤조정대상 환급세액	⑥당월조정 환급세액	⑦차월이월 환급세액
⑧전월미환	⑨기환급세액	⑩차감잔액				
			6,000	6,000		6,000

※ 현재 작성중인 신고서의 (12)전월미환급세액과 마지막 행의 ⑦차월이월환급세액은 같아야 합니다.

취소 입력완료

10) 오류가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작성된 신고서가 홈택스로 전송 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화면에서 표시된 오류내용을 수정 후 다음절차를 진행

그리고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음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답/제보

**원천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메뉴별칭 메뉴명기 테스트법인(본점) | 100-01-00002 제출여부 >>> 제제출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01. 기본정보 입력**

**02.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환급신청서)**

**03. 신고서부호**

**05. 신고서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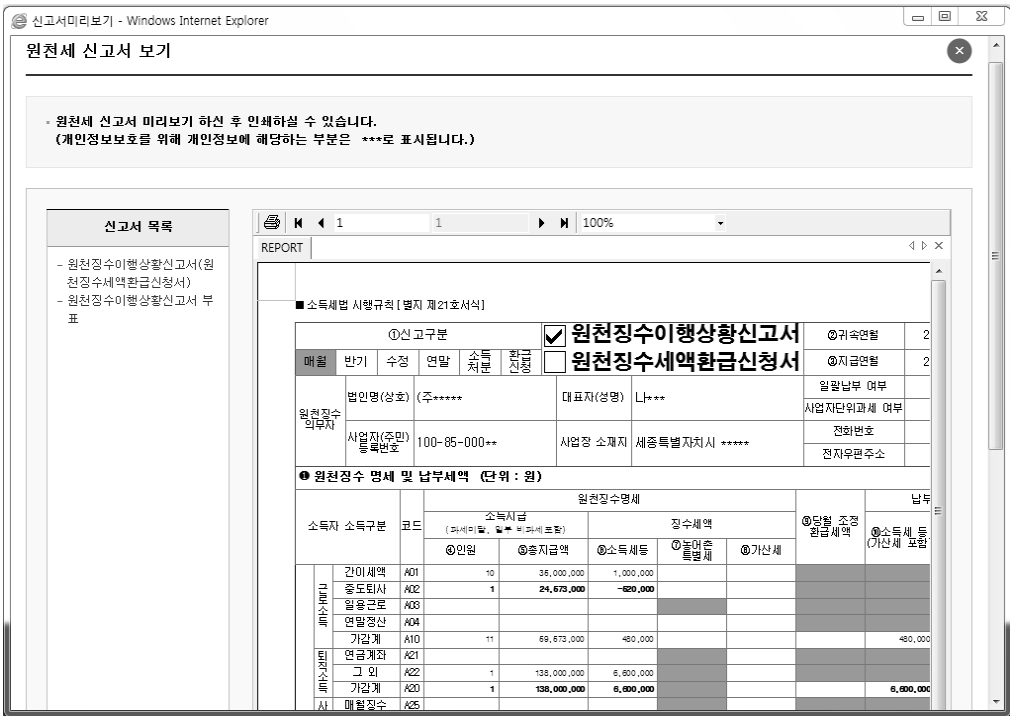
**신고서 제출**

- 지금까지 입력한 자료의 세액계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 있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회계제출 됩니다.

**원천세 신고내용 요약**

귀속년월	2017-04	지급년월	2017-04
제출년월	2017-05	신고구분	정기신고
원천징수의무구분	매월	환급신청여부	부
소득세 납부세액	80,000 원	동여준특별세 납부세액	0 원
차월이월 환급세액	0 원	환급 신청액	0 원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11)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여 발급되는 접수증의 접수결과와 신고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다만, 납부서는 원천세 신고화면에서는 출력되지 않으므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납부]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음



## 12) 전자 납부하기

- 원천세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 전송 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 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며 이용시간은 매일 07:00~22:00까지 가능합니다.
  - 납부서는 소득별로 각각 조회되며 저축해지추징세액은 갑근세로 발행됩니다.
  - 지방소득세 전자납부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또한, 수동으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경우 [자료실]의 62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출력하여 금융회사에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 이나, 22:00~23:30 사이에 납부하는 경우는 익일 07:00에 납부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를 이용한 이체는 23:00 까지 가능하나,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지세의 경우 최근한 건이 아래쪽에 조회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인지세 작성내역이 조회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시 개인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경우에는 개인명의 카드로, 사업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사업자명의 카드로만 납부가능합니다.
- 고지분을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체납)에는 재계산된 납부기한, 납부할세액(가산금 포함)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60개월 이상 체납된 건은 ‘(직전)납부기한’ 항목에 59개월째 가산금이 부과된 직전납부기한이 보여집니다)

조회하기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 : 납부할 건수 : 4 건    납부할 세액 : 8,779,000원

총4건의 납부해야 할 결과가 있습니다. <납부결과 반영에 10분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납부후에는 납부내역을 확인하세요.>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관서명(관서코드)	과세구분	세목	귀속년도 (직전)납부기한	납부할세액	납부세액	담당자	전자납부번호
<input type="checkbox"/>	종로(101)	정기신고	사업소득세	2017    2017-05-10	80,000		김타수...	0126-1704-4-13-89020913
<input type="checkbox"/>	종로(101)	고지분	건물대여·	2017    2017-03-09	4,999,000		서가공...	0126-1702-6-72-85020030
<input type="checkbox"/>	종로(101)	고지분	건물대여·	2017    2017-03-09	3,000,000		서가공...	0126-1702-6-72-85020031
<input type="checkbox"/>	홍성(310)	고지분	건물대여·	2017    2017-03-17	700,000		아무밤...	0126-1702-6-72-85020061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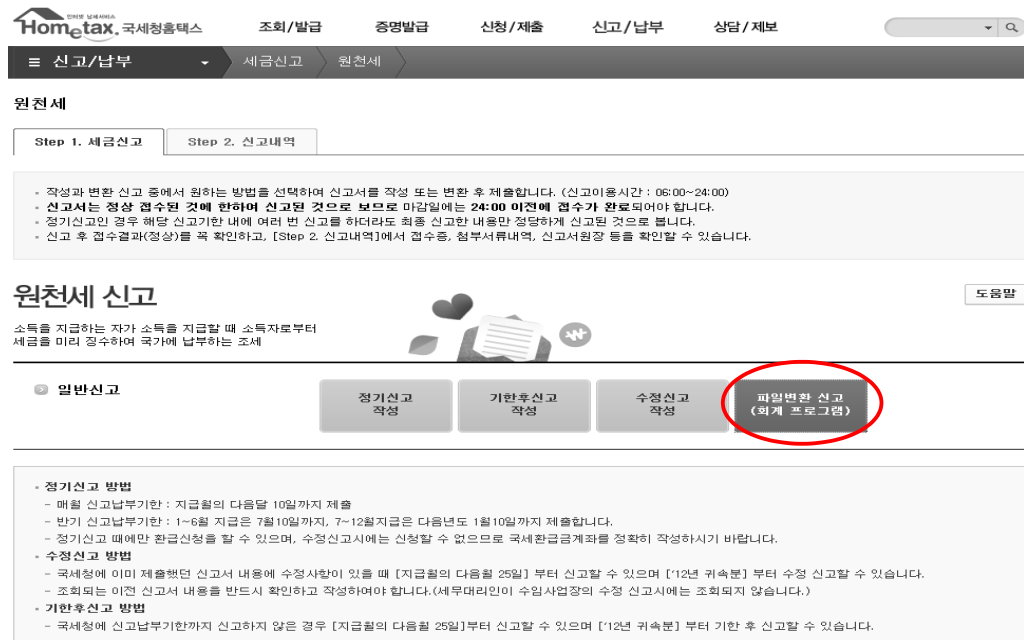
- 인터넷 세금신고 자료에 한하여 신고납부기한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후에는 신고한 납부정보는 신고당일에만 서비스)
-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는 [직전납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결과확인과 납부확인서출력은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납부내역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분이 아닌 신고분의 경우 홈택스 이외 방법으로 납부시 [납부할세액조회납부]화면에 반영되지 않으니, 납부결과확인용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납부내역조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변환방식 (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입력하여 생성된 파일 변환하여 전송)

1) [신고/납부]메뉴를 선택하고 [세금신고]에서 [원천세]를 클릭



2) [원천세 신고]화면에서 [파일변환 신고(회계 프로그램)]를 클릭



- 3) 변환할 파일선택 후 [파일형식검증하기] → 비밀번호 입력 → [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이동] 후 신고서 요약 내용 확인하고 [전자파일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접수증] 확인 및 출력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원천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01. 전자파일변환  
02. 변환결과조회  
03. 전자파일제출

● 전자파일변환

· 변환순서 : [찾아보기] → [파일형식검증하기] → 비밀번호 입력 → [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이동] →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요약내용 확인 후 [전자파일제출하기] → '파일접수증' 확인 → [Step 2. 신고내역]

● 변환대상파일선택

※ 암호화된 파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파일내역

NO	전자파일명	파일크기
01	20150410C103900_01	530kb

● 처리내역

※ 오류납세자수, 정상납세자수 건수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파일처리내역

파일이름	파일형식검증			내용검증	
	대상 납세자수	오류 납세자수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오류납세자수 (확인납세자수)	정상납세자수
	라인(줄)수	오류항목수		오류항목수	

· 진행현황

· 진행중인 검증이 없습니다.  
[찾아보기]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후 [파일형식검증하기] 눌러 진행하세요.

파일형식검증하기 → 내용검증하기 → 전자파일제출 이동

※ 전자파일명을 부여하는 방법

- 일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코드(C103900).신고구분상세코드
- 일자 : YYYYMMDD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 서식코드 : C103900
  - 신고구분상세코드
    - 정기신고 : 01
    - 수정신고 : 02
    - 기한후신고 : 03
- 예) 20170410C103900.01



### (3) 신고내역 확인

1) [원천세 신고]화면에서 [Step 2. 신고내역]을 클릭

원천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 항목값이 일부만 보일 경우 마우스를 항목값에 가까이 하거나, 항목값 경계에서 크기를 조절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하기] 후, 접수증( )을 선택하여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첨부서류)]를 각각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속서류제출]에서 PDF 형태로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에서 'Y'로 보여집니다.
- [부속서류제출여부]의 (Y/N)을 클릭하여 부속서류 제출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목록

\* 신고일자 2017-04-01 ~ 2017-04-30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조회하기**

- 조회한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접수증 일괄조회, 출력 및 저장을 하려면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한다.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총 8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10건 **확인**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보기)	접수여부 (첨부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ID	부속서류 제출여부
2017·	원천징·	정·	정·	테스트·	100-81-0·	인터넷(·	2017-04·	101-201·	정상(0건)	☐	testtest2	

2) 원천세 전자신고내역을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음

### 3. 원천세 전자신고·납부 Q&A

#### 1) 원천세 전자신고 개요

- 동일한 귀속연월, 지급연월의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합니다.
  - 귀속연월이나 지급연월이 다르면 각각 접수됩니다.
  - 정기분 전자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수정, 기한 후 전자신고는 월말까지 최종으로 전송한 1건을 인정합니다.
- 신고서 전송 후 [원천세 신고]화면에서 [Step 2. 신고내역]에서 요약내역과 접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신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에서 원천세 전자 신고를 삭제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와 조회서비스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신고는 아이디 로그인만으로도 가능)
- 폐업자도 원천세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 폐업신고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작성방식]에 의해 원천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납부자는 언제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 반기별 납부자는 매년 1월, 7월 제출합니다. 단, 연말정산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3월 제출, 폐업신고한 사업자인 경우 지급월의 익월10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등은 Window 7이상에서 가능하므로 Window xp를 사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컴퓨터 사용환경을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 2) 작성방식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에 의해 직접 작성하여 전송)

- 반기별납부승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징수의무자 기본사항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신고구분(매월납부/반기납부)이 사업자정보의 신고구분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 이미 작성내용이 있어 같은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서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새로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재작성합니다.
- 신고해야할 소득을 입력하는 칸이 보이지 않습니다.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소득종류선택에서 신고해야 할 소득에 체크합니다.
- [신고서부표입력]화면에서 “징수세액-조정환급세액은 납부세액과 같아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 징수세액 소득세등과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세등에 세액을 모두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가 맞아야 합니다.
- 저축해지추징세액 납부서는 세목이 근로소득세로 발행됩니다.

## 3) 변환방식 (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입력하여 생성된 파일 변환하여 전송)

- 회계프로그램에서 변환파일 생성시 입력한 홈택스ID와 제출시 로그인ID가 일치하여야 제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통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변환 제출은 불가하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주사용자 ID(A)로 변환파일 생성하는 경우 주사용자 ID(A)로 로그인하여 제출  
② 부서사용자 ID(B)로 변환파일 생성하는 경우 부서사용자 ID(B)로 로그인하여 제출

#### 4) 전자납부

- 신고서를 전송했는데 [신고/납부 - 세금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세액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메뉴에서 세목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메뉴에는 신고마감일까지만 조회되며 마감 후에는 [자진납부] 메뉴에서 납부합니다.
- 같은 금액을 두 번 전자납부하려고 하는데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은행의 동일한 계좌에서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전자납부시 입력내용 (납부기한, 납세자번호, 서코드, 세목코드, 납부금액)이 동일한 경우 1일 1회만 납부 가능합니다.

# 제 4 장

##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 1. 비거주자 판정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 과세소득의 범위

구 분	거 주 자	비 거 주 자
과세범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 이행 등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입증방법 열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 금융기관의 비거주자 판정 기준표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번호 <sup>2)</sup>	거주지국	거주지국 주소	거주지전화	국내체재일 <sup>3)</sup>
						최근 1년간 일
성 명 [영문 <sup>1)</sup> ]		생년월일 <sup>1)</sup>	특례지역 <sup>4)</sup>	국내 거소	국내전화	최근 2년간
Surname	Given name	여권번호 <sup>3)</sup>				일

- 1) 영문성명·생년월일은 여권에 기재된 대로 기재합니다.
- 2)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3) 여권에 기재된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 4) 거주지역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 “라부안” 기재,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선 원천징수하고,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차액을 환급합니다.
- 5) 국내 체재일 계산은 금융상품 가입시 또는 금융소득지급 등 원천징수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해당되는 빈칸에 ○표 하십시오

항 목	예	아니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3.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5.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6.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8. 외국의 국적이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 하십시오.		

첨부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거주자증명서(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된 자료), 여권사본

1. 거래기간 중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즉시 판정기준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본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겠습니까.
2. 금융기관별 금융상품가입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매3년마다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3. 위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고객명 (인, 서명)

귀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귀 금융기관이 본인의 법무부 출입국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고객명 (인, 서명)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요령

1. 본 판정기준표는 금융상품 가입시 및 만기·해약시에 제출받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별 금융상품가입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만기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매3년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습니다.
2.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당해 판정기준표에 의하며 외국 국적이거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는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당해 판정표의 기재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3. 판정기준표의 작성 결과 1~7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기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4. 비거주자 해당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거주자증명서, 여권 사본)를 제출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소득세법 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별도)하고, 추후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정산합니다.  
※ 가입시 ‘계좌별’(매3년마다 또는 만기·해약시는 ‘금융기관별’로 판정) 금융상품가입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거주자증명서’ 제출은 면제합니다.
5. 국내체류기간 계산에 참고하기 위하여 받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가입시에는 가입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인 자료를 제출받으나, 매3년마다(1호 단서에 따라 비거주자판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만기·해약시에는 직전 판정시기 이후 최초로 금융소득을 지급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인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6. 고객이 대한민국 세법과 해당국의 세법에 의하여 양국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세조약상 판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① 항구적인 주거지	②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인 거소	④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이 속한 국가
⑤ 상호합의	

## 2. 과세대상소득

### ○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 ㉔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㉕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그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상)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 : 14)
2호	배 당 소 득			20
3호	부 동 산 소 득			-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10호	사 용 료 소 득			20
11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 타 소 득			20
7호	근 로 소 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 금 소 득			거주자와 동일
6호	인 적 용 역 소 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가능)	20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토 지 · 건 물 등 양 도 소 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의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적용시 주의사항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 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원천징수절차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
-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 하는 것임. 다만, 개인 양수자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가능 (소득세법 §121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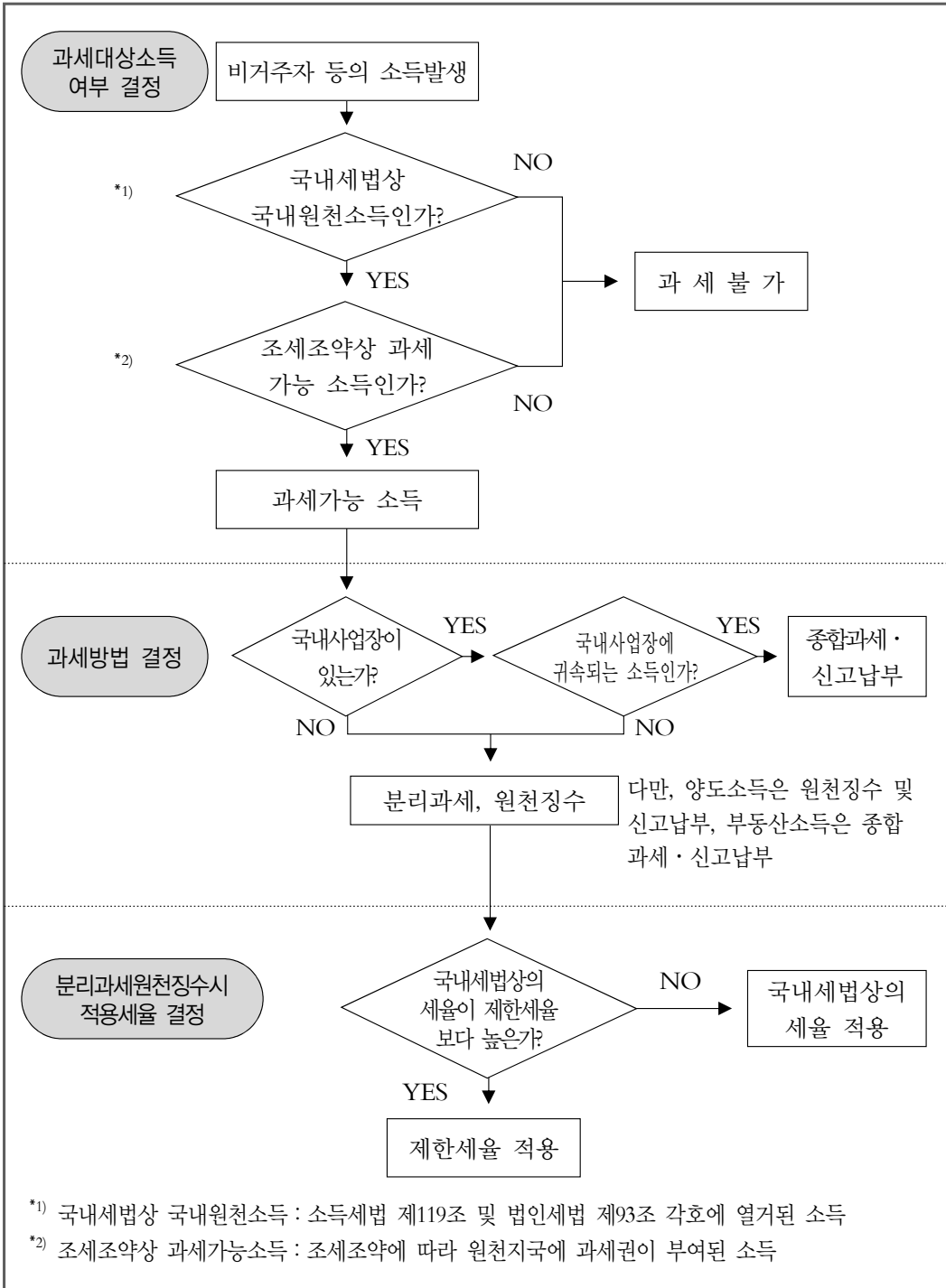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제93조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 : 14)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8호	사용료소득			20	
9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0호	기타소득			20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신고·납부 가능)	20
7호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호	부동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

- 적용시 주의사항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예납적 원천징수)
  - ①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②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절차 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
-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다만, 개인 양수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도 가능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 체계



### 3. 원천징수의무자

####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98, 소득세법 §156)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세법 §156의7)

- (매월 원천징수) 내국법인<sup>\*1</sup>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의 소속 파견근로자<sup>\*2</sup>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 2016.07.0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 \*1. 내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 범위

- ①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30억원을 초과할 것
- ②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할 것

##### \*2. 파견근로자 범위

파견외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내국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사용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법 제137조 연말정산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내국법인이 연말정산 대리 가능)

- 제출서류(관할세무서장)

- (원천징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사용내국 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파견외국법인이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양도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 (확정)[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2007. 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 4.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납 세 지
거 주 자	<p>㉠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납세지</p> <p>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p>
비거주자	<p>㉡ 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p> <p>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p>
법 인	<p>㉢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p> <p>㉣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다만, 법인이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할 수 있음</p>
비거주자의 원천징수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까지의 규정에 정한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p>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p> <p>-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p> <hr/> <p>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p>

## 5. 원천징수 시기

-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
-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그 지급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 이와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지급시기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 6.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

$$\text{과세표준} = \text{지급금액} \times \frac{1}{1 - \text{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세율도 포함

-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을 산출

$$\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 \text{제한세율} \times \frac{1}{1+0.1} = 0.09090$$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법인세)의 10%인 경우





## 7. 원천징수 세율

### ○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
-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 ○ 제한세율 개념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 ○ 제한세율 특징

-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따라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갖는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국내세법상의 세율로 과세를 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함

### ○ 제한세율 적용 절차 (2012.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1) 직접투자의 경우

##### ○ 투자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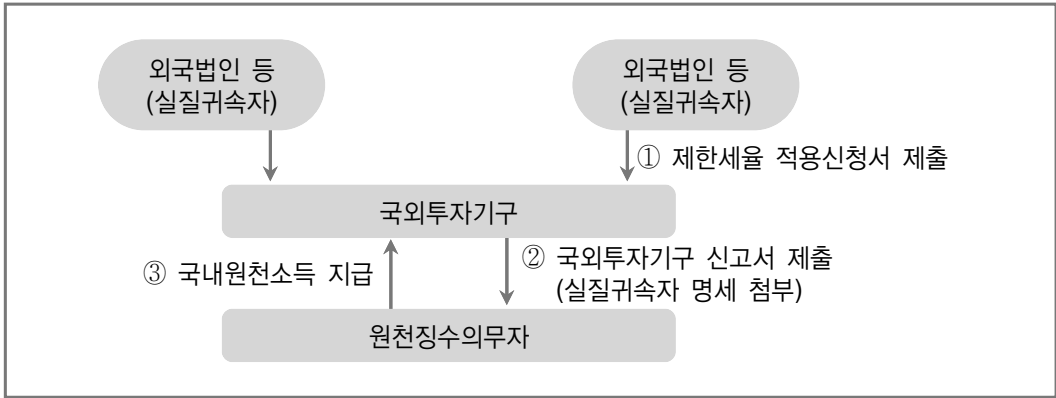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내용변동이 없는 경우 3년간 유효)

\*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외국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 비거주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서식

- 연금·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 ①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 ②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 적용
- 2) 간접투자의 경우
  -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13서식) 제출
    - 국외사모투자기구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 적용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흐름도>



※ 국외투자기구 : 국외에서 설립되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 행위를 하는 단체

3)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 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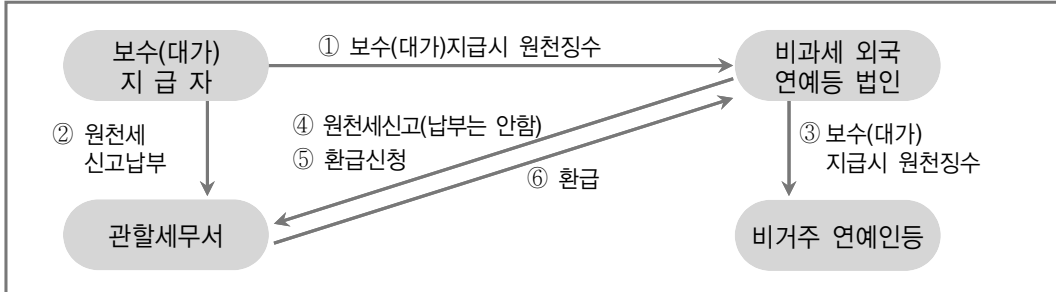
4) 경정청구 관련 사항

-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 제한세율 적용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 8.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소법 §156의5①)

-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
- 비거주 연예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를 승인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함(소법 §128②3)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흐름도>



- ①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 ②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③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인적용역·근로·기타소득 포함)과 관련하여 소속 비거주 연예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비과세 외국법인등은 지급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의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위 특례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소법§156의5②)
- ④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원천징수한 금액을 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납부는 안함)
- ⑤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의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외국연예인등법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소법§156의5③)
- ⑥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비과세 외국 연예등법인에 지급함

○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범위

연예인 또는 운동가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운동가 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촬영·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 (소령§207의7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

-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소령§207의7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지급자와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 비거주연예인등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소령§207의7③)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면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소령§207의7④)

-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 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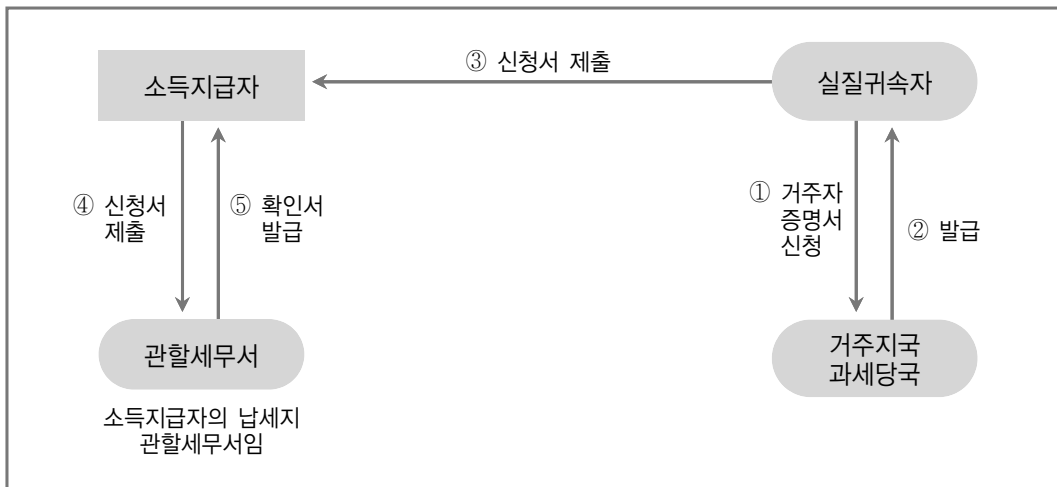
## 9.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 10. 비과세·면제신청(소법 §156의2)

-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을 제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흐름도>



-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실질귀속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 제출(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

소 득	서 식 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이자·배당· 사용료·기타소득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	제29호의2서식(1)
유가증권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	제29호의2서식(2)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	제29호의2서식(3)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	제29호의2서식(4)

-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
  - \* 다만, 복권 등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등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은 여권 사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거주자 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음
-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납세관리인 포함) 등으로 하여금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 등의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와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 등 및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 등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1. 지급명세서 제출

### ○ 제출자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제출 기한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근로소득,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 제출 특례

-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의2(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부동산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
-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17)」를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국제조세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 12. 조세조약 체결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2016. 10. 현재)

(가나다 순)

조 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 소 득	원천징수	기 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가봉	15.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회사세 등 · 자연인 소득 조세 · 급여에 대한 보완세 · 임대외 특별부동산세 등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10%	16.1.1. 이후 지급분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그리스	98.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8%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보통세 · 비거주자 주주세 · 제2차기업세	10% (신용판매 이자 면제)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10%	97.1.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네덜란드 (개정 99.4.2)	81. 4.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임금세 · 법인세 · 배당세	· 7년초과 차관 : 10% · 기 타 : 15%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기타 : 10% · 저작권 : 15%	81.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네 팔	03. 5.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 되는 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10%	· 25%이상 법인 : 5% · 10%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15%	04.1.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노르웨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 국가기여금 (조세평형기금) · 중앙정부세(석유관련) ·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 선원세	15%	15%	· 기타 : 10% · 저작권 : 15%	82.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뉴질랜드	83.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초과유보세	10%	15%	10%	한국 : 81.1.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 81.4.1. 이후 개시하는 소득 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한국 : 8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 : 81.4.1. 이후 개시하는 소득 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의 정 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적용 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기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덴마크	79. 1.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중앙행정부 소득세 · 시(군)소득세 · 노년연금기여금 · 선원세 · 특별 소비세 · 배당세 · 질병기금기여금	15%	15%	· 산업적 투자 : 10% · 기타 : 15%	77.1.1. 이후 지급분	77.1.1. 이후	의정서
독일(개정 02.10.31)	78. 5.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세 · 자본세 · 영업세	· 7년이상 차관 (은행) : 10% · 기타 : 15%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 산업적 투자 : 10% · 기타 : 15%	76.1.1. 이후 지급분	7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02.10.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 자본세 · 영업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5%	· 장비 사용 : 2% · 기타 : 10%	03.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라오스	06. 2.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 · 최저세 ·	10%	· 10%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 기타 : 10%	5%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라트비아	09.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적 장비 : 5% · 기타 : 10%	10.1.1 이후 지급분	1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의정서
러시아	95. 8.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기업 및 유사 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거주지국 과세	· 직접 30% 이상 소유 회사(조합 제외) & 10만달러 이상 투자 : 5% · 기타 : 10%	5%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제4장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 조세		제한 세율 (원천징수)			적용 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기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루마니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 ·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 배당세	10% (산업적·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7% · 기타 : 10%	·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 7% · 기타 :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룩셈부르크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법인이사보수세 · 자본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 정보 : 10% · 기타 : 15%	84.1.1. 이후 지급분	8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리투아니아	07.7.1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 사용 : 5% · 기타 : 10%	08.1.1. 이후 지급분	8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말레이시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초과이윤세 · 주식이윤세· 개발세· 산림 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 석유소득세	15%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기타 : 10% · 저작권 (문학 예술) : 15% · 저작권 (학술) : 10%	82.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연도)	의정서
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사업단일 세율세 (08.1.1부터) · 자산세(07.12.31 까지)	· 은행 : 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동안은 10%) · 기타 : 15%	· 10% 이상 법인 : 0% · 기타 : 15%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 조세		제한 세율 (원천징수)			적용 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기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모로코	00. 6.1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일반소득세 · 법인세 · 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 부동산소득세 · 국가통합세 · 고정수익투자 상품세 · 주식과 사회적지분의 도소득세	10%	· 25%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 저작권 등 : 5% · 기타 : 10%	01.1.1. 이후 지급분	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몰타	98. 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10% (신용판매 이자면제)	· 25%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 기타 : 15%	0%	99.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몽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자연별과금 제외)	5%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미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 연방소득세	12%	· 10%이상 소유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이하 : 10% · 기타 : 15%	· 저작권· 필름 : 10% · 기타 : 15%	79.12.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미얀마	03. 8.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 농특세 (소)	· 소득세 · 이익세	10%	10%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대가 : 10% · 기타 : 15%	04.1.1. 이후 발생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바레인	13. 4. 26	소득세 법인세 지방 소득세 농특세	· 1979년 국왕 칙령 제22호에 따른 소득세	5%	· 25%이상 회사(동업 기업 제외) : 5% · 기타 : 10%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방글라데시	84. 8.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10% (신용판매 이자면제)	· 10%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10%	83.1.1. 이후 지급분	8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제4장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 조세		제한 세율 (원천징수)			적용 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기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베네수엘라	07.1.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소득세	· 은행 5% · 일반 10% · 정부 등 면제	· 10%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 : 5% · 기타 : 10%	08.1.1. 이후 지급분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이윤세 및 이윤 송금세	10%	10%	· 특허권등 산업적 투자 : 5% · 기타 : 15%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벨기에 (개정 96.12.31)	79. 9.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비영리단체세 · 비거주자소득세 ·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 부과금	10%	15%	10%	97.1.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벨라루스	03. 6.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 개인소득세 · 부동산에 관한 조세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5%	04.1.1. 이후 발생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불가리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총소득에 대한 조세 · 이윤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 이자면제)	· 1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5%	95.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브라질	91.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단, 보충 소득세 및 비주요 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 7년이상 차관 (은행) : 10% · 기타 : 15%	10% (98.1.1 이후), 15% (97.12.31이전)	· 상표권 : 25% · 저작권 : 10% (97.12.31 이전 : 15%)	92.1.1. 이후 지급분 · 기타 : 10% (05.12.31 이전 : 15%)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브루나이	16.10.1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 소득세	· 소득세 · 석유소득세	10%	· 25% 이상 회사(파트너십 제외) : 5% · 기타 : 10%	10%	한국:17.1.1 이후 지급분 브루나이: 17.1.1 이후 개시되는 부과연도 과세분	한국:17.1.1 이후 지급분 브루나이: 17.1.1 이후 개시되는 부과연도 과세분	의정서

조 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 소 득	원천징수	기 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사우디 아라비아	08.1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종교세 · 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5%	· 25% 이상 법인(동업 관계제외) : 5% · 기타 : 10%	· 산업 · 상업 · 학술 장비 : 5% · 기타 : 10%	09.1.1. 이후 지급분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스리랑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10%	80.1.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중앙정부소득세 (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 지방소득세 · 연예인에 대한 조세	· 7년초과 차관 (은행) : 10% · 기타 : 15%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기타 : 10% 저작권 : 15%	81.1.1 이후 지급분	8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에 대한 연방세 · 주세 · 자치단체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10% 문학·예술 작품(필름 포함)의 저작권 제외]	79.1.1. 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신용판매 이자면세)	· 25%이상 회사 : 10% · 기타 : 15%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슬로바키아	03.7. 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부동산세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10% 다만 학술 작품의 저작권은 면세	03.7.8.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슬로베니아	06.3.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5%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5%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싱가포르 (개정 13. 6. 28)	81.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15%	79.1.1. 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제4장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 소 득	원천징수	기 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U.A.E.)	05. 3.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10%	· 10%이상 법인 5% · 기타 : 10%	0%	03.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아이슬란드	08.10.2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국가에 대한 소득세 · 국가에 대한 부유세 ·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5%	10%	09.1.1. 이후 납세분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Income Levy · 법인세 · 양도소득세	0%	· 10%이상 법인 10% · 기타 : 15%	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아제르바이잔	08.11.2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이윤세 · 재산세 · 토지세	10%	7%	· 특허, 의장, 산업· 상업· 과학적 경험정보 : 5% · 기타 : 10%	09.1.1. 이후 발생분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알바니아	07.1.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 중소기업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10%	08.1.1. 이후 부터의 과세분	08.1.1. 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	
알제리	06.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종합소득세 · 기업이윤세 · 전문활동세 · 총액세 · 세습상속세 · 기타 알제리의 조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5%	· 장비 사용 대가 : 2% · 기타 :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스토니아	10.5.25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 5% · 기타 : 10%	11.1.1. 이후 지급분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조 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 소 득	원천징수	기 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영 국 (개정 96. 12. 29)	78. 5.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5%	· 장비사용 : 2% · 기타 : 10%	97.1.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교환 각서
오 만	06. 2.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기업소득세 · 이윤세	5% (지세 가산금 제외)	· 10%이상 소유 법인 (조합제외) : 5% · 기타 : 10%	8%	07.1.1. 이후 부터의 과세액	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오스트리아 (개정 02. 3. 30)	87.1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세 · 이자에 대한 조세 · 이사(Director)에 대한 조세 · 자본세 ·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 총 임금에 부과 되는 조세를 포함한 상업적 · 산업적 기업에 대한 조세 · 토지세 ·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 농림기업의 가계 부담형평 기금에 대한 기여금 ·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 이자면제)	· 10%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10%	88.1.1. 이후 지급분	8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02. 3.3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세 ·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 이자면제)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5%	· 장비사용 : 2% · 기타 : 10%	03.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요르단	05. 3.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사회서비스세 · 분배세	10%	10%	10%	한국 : 06.1.1 이후 납세분 요르단 : 06. 1. 1 이후 발생분	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제4장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 소 득	원천징수	기 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우루과이	13. 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 방 소득세	· 사업소득세 · 개인소득세 · 비거주자소득세 · 사회보장지원세 · 자본세	10%	· 25%이상 법인(동업 기업 제외) : 5% · 기타 : 15%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우즈베키 스탄	98.12.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 개인소득세 · 재산세	5%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5%	· 장비사용 대가 : 2% · 기타 : 5%	99.1.1. 이후 지급분	99.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우크라이나	02. 3.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기업이윤세 · 개인소득세	5%	· 20%이상 법인 : 5% · 기타 : 15%	5%	한국 : 03.1.1. 이후 지급분 우크라이나 : 배당·이자·사용료의 조세 및 개인소득 세는 협약의 발효일부터 60일째되는 날 이후 지급분	한국 : 0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 기업소득세 03.1.1. 이후 개시 과세 연도	의 정 서
이 란	09.12.8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 재산세	10%	10%	10%	10.1.1. 이후 부터 과세분	10.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 재산세법상 실물 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 금융기관 수취 : 7.5% · 기타 : 10% · 채권, 사채, 국공채 이자 : 면제	· 10%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예외사항 에 해당 하는 경우 : 10% · 기타 : 15%	· 장비사용 : 2% · 기타 : 5%	98.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조 약 체결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 소 득	원천징수	기 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 임금· 급료· 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 일반소득세 · 법인이윤세 ·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 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 3년초과 차관 : 10% · 기타 : 15%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15%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이탈리아	92. 7.1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생산적활동에 대한 지역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10%	93.1.1. 이후 지급분	9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 정 서
인 도	86.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소득)부가세	· 은행 : 10% · 기타 : 15%	· 20%이상 법인 : 15% · 기타 : 20%	15%	한국 : 86.1.1. 이후 인도 : 86.4.1. 이후 지급분	한국 : 86.1.1. 이후 개시 하는 과세 연도 인도 : 86.4.1. 이후 개시 하는 소득 연도	의 정 서
인도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15%	90.1.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제4장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 소 득	원천징수	기 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일 본 (개정 99.11.22)	70.10.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법인세 · 주민세	10%	· 직전 6개월 25%이상 법인 5% (03년까지 10%) · 기타 : 15%	10%	00.1.1. 이후 지급분	0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중 국 (홍콩, 대만, 마카오 적용제외)	94. 9.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개인소득세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10%	95.1.1. 이후 개시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개정 06. 7. 4)	06. 7.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10%	07.1.1. 이후 개시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제 2 의 정 서
체 코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이윤에 대한 조세 · 임금세 · 문학 및 예술활동 소식에 대한 조세 ·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 주택세	10% (신용판매 이자면제)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10% (저작권 사용료 면제)	95.3.3.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칠 레	03. 7.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 은행 및 보험 회사 : 5% (04.1.1 이후), 10% (03.12.31 이전) · 기타 : 15%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 5% · 기타 : 10% (04.1.1 이후), 15% (03.12.31 이전)	04.1.1. 이후 발생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카자흐스탄	99. 4.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 10%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5%	· 상업적· 산업적· 학술적 장비 : 2% (03.1.1 이후), 10% (02.12.31 이전) · 기타 : 10%	00.1.1. 이후	0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 조세		제한 세율 (원천징수)			적용 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기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카타르	09.4.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소득세	10%	10%	5%	10.1.1. 이후 원천징수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캐나다 (개정 06.12.18)	80.12.19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15%	15%	15%	80.1.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06.12.1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5%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콜롬비아	14.7.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소득세 및 보완세	10%	· 20%이상 법인(동업 기업제외) : 5% · 기타 : 10%	10% · 그 사용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 을을 조건 으로 하는 계3형에 연급된 모든 권리 또는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 소득 포함	15.1.1. 이후 지급분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쿠웨이트	00. 6.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소득세 ·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익의 5% · 자카트세	10%	10%	15%	98.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10.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소득세 ·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익의 5% · 자카트세	5%	5%	15%	11.1.1. 이후 지급분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크로아티아	06.9.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이익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관련 과징금	5%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키르기즈	13.1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 소득세	· 법인의 이윤과 그 밖의 수입에 대한 조세 · 개인소득세 · 부동산세	10% (신용판매 이자면세)	· 25%이상 법인(동일 기업제외) :5% · 기타 : 10%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 5% · 기타 :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제4장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 조세		제한 세율 (원천징수)			적용 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기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타지키스탄	16.9.28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 소득세	· 개인소득세 · 법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	8% (신용 판매 이자면세)	· 25%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 : 15% · 기타 : 20%	10%	17.1.1 이후 지급분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태 국 (개정 07.6.29)	77.10.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석유소득세	금융기관 (보험회사 포함) : 10%	· 산업적 업종 또는 25% 이상 법인 : 20% · 산업적 업종 & 10%이상 법인 : 15%	15%		7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각 서
	07. 6.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소득세 · 석유소득세	· 금융기관 (보험회사 포함) : 10%	10% · 장비, 재화나 용역의 신용 매매의 결과로 얻는 부채분 이자 : 10% · 기타 : 15%	· 소프트웨어, 방송관련 태이프등, 과학작품 사용권 등 : 5% · 특허권 및 상표권 등 : 10%	08.1.1. 이후 지급분 ·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경험에 관한 정보 : 15%	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터 키	86. 3.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세	· 2년 초과 : 10% · 기타 : 15%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15% · 기타 : 20%	10%	87.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 정 서
튀니지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사업소득세 · 법인세 · 비상업적 직업 소득세 · 급여소득세, 농업세 · 부동산자본평가세 · 신용 · 저축 · 보증 및 당좌계정으로 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 연대특별부과금 · 양도성증권소득세 · 국가개인부과금	12% (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1.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파나마	'12.4.1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세법 제4권 1장 및 그와 관련된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소득세	5%	· 법인자본의 25%이상 직접 소유 : 5% · 기타 : 15%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 : 3% · 기타 : 10%	13.1.1. 이후 지급분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정 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적용 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초과세 · 부가세	12.5%	·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 기업 & 수익 자가 20% 이 상 소유한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2.5%	10%	87.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파푸아 뉴기니	98.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정된 파푸아 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 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페루	14.3.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 소득세	소득세법(Ley del Impuesto a la Renta)에 따라 정부가 부과 하는 소득세	15%	10%	· 기술적 지원제공 : 10% · 기타 : 15%	15.1.1. 이후 지급분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법인소득세에 부과 되는 지방세	15%	· 2년 이상 25%이상 회사 : 10% · 기타 : 15%	10%	98.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폴란드	92.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 균등화세 · 법인 소득세 · 농업세	10% (신용판매 이자면제)	· 10%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기타 : 10%	10%	91.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제4장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 조세		제한 세율 (원천징수)			적용 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기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프랑스 (개정 92. 3. 1)	81. 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법인세	10% (신용판매 이자면제)	· 10%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10%	92.3.1. 이후 지급분	· 개인 : 92.3.1. 이후 발생 소득 · 법인 : 92.3.1. 이후 개시 하는 사업 년도	의정서
피지	95. 2.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 자의 배당·이자· 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 토지판매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핀란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국가소득세 · 공동체세 · 교회세· 선원세 ·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10%	82.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 공모공 사채이자 : 10% · 기타:15% · 필리핀 투자촉진법 : 10%	·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10% · 기타 25% (07.5.17 이전 배당 처분 :15%) · 필리핀 투자 촉진법 : 10%	15% · 필리핀 투자 촉진법 : 10%	87.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 이윤세 · 특별법인세	0%	· 25%이상 법인 5% · 기타 : 10%	0%	91.1.1. 이후 지급분	9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호주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비공개 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82.1.1. 이후 발생소득	8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홍콩	16.9.2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 소득세	· 이윤세 · 급여세 · 특별법인세	10%	· 25%이상 회사 (파트너십 제외) : 10% · 기타 : 15%	10%	17.4.1 이후 지급분	1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 적용 시 유의사항

-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 : 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대상조세의 '주민세'는 2010.1.1부터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의미합니다.
-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taxi.hometax.go.kr](http://taxi.hometax.go.kr)) 「법령 > 조세조약」란
  -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http://www.mofat.go.kr))의 「조약정보」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이 책의 내용은 2017.5월 기준의 세법 내용 및 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 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발행일자 : 2017년 5월 일

발행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편집 : 원천세과장 오 덕 근  
서 기 관 임 진 정  
행정사무관 김 용 재  
국세조사관 노 영 인  
국세조사관 하 정 영

※ 본 책자를 복사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요!  
대한민국세미래

稅美來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는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국세청의 공정세징'으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입니다.

국세청 126 세미래공성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